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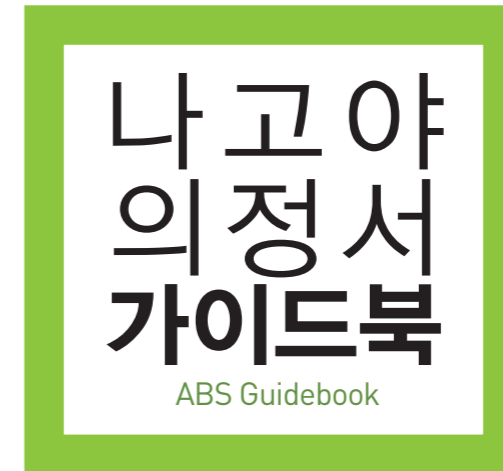


발간등록번호
11-1480000-001197-01

나고야 의정서 가이드북

ABS Guidebook

www.me.go.kr | www.nibr.go.kr



CONTENTS

I. 나고야 의정서 논의배경 및 경과	4
II. 나고야 의정서 개요	8
III. 나고야 의정서 주요 절차	11
IV. 나고야 의정서 주요 쟁점 Q&A	12
1. ABS 관련 주요 용어	12
2. 나고야 의정서 주요 쟁점 사항	15
3. 발효시점	16
4. 적용대상	19
5. 사전통보승인	24
6. 상호합의조건	28
7. 이익 공유	31
8. 주요기관	34
9. 의무준수	36
10. 접근 및 이익 공유 정보공유체계	38
11. 세계 다자간 이익 공유 체계	40
V. 나고야 의정서 해외 대응사례	42
VI. 나고야 의정서 관련 국내외 법령 현황	46
참고 나고야 의정서(국·영문)	51

나고야 의정서 가이드북

ABS Guidebook



I. 나고야 의정서 논의 배경 및 경과

1. 생물다양성 협약의 채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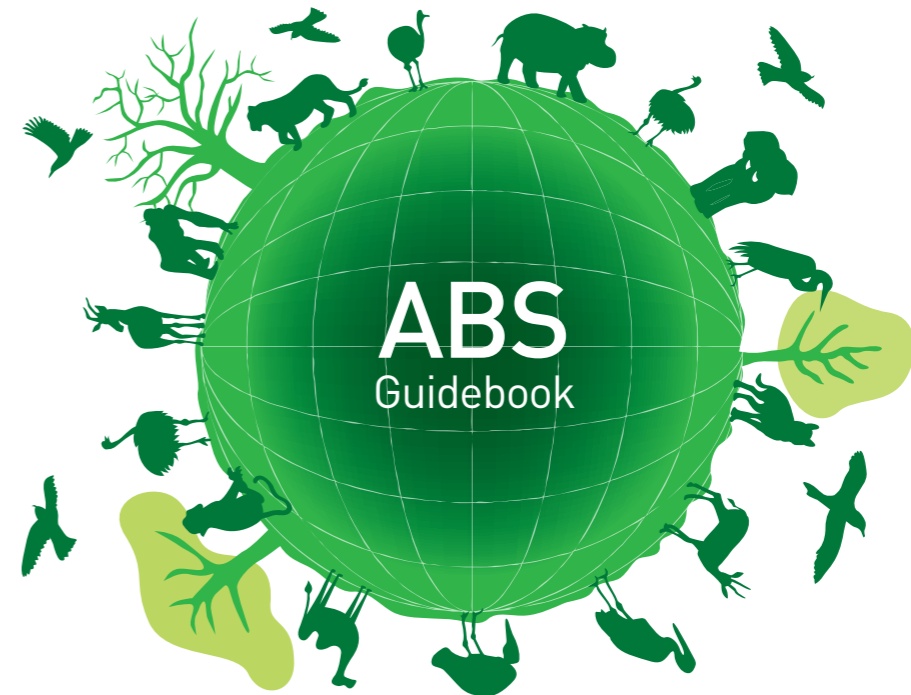
- 생물다양성 협약(CBD :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채택이전 생물유전자원은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인식되어 자유로운 접근·이용 가능
- 1992년 생물다양성협약이 채택되면서 생물자원에 대한 국가의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고, 생물유전자원의 사전접근승인 및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ABS :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 이하 “ABS”라 한다)를 규정(생물다양성 협약 제15조)
 - 선진국의 생물자원 이용으로부터 정당한 이익을 분배받지 못하고 피해를 받았음을 주장하는 개도국의 입장이 반영되어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평한 공유를 협약의 목적 중 하나로 채택



생물다양성 협약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 발효 및 가입현황**
- 채택 및 발효 : '92.5.23 채택, '93.12.29 발효
 - 우리나라 가입 및 발효 : '94.10.3 가입, '95.1.1 발효
 - '11년 현재 가입국 : 193개국 및 EU(미국은 비준 미 이행)
- 생물다양성의 개념**
- 생명체의 다양성과 생명체가 살아가는 서식처의 다양성을 총칭
 - 유전자(gene), 종(species) 다양성, 생태계(ecosystem) 다양성을 포함
- 협약의 목적**
- 생물다양성의 보존
 - 생물다양성 구성 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 생물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평한 공유



2. 본 가이드라인의 채택

생물다양성 협약에는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와 관련하여 구체적 이행 방법 및 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2002년 CBD 제6차 당사국 총회(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본 가이드라인(Bonn Guidelines)' 채택

- '본 가이드라인'은 ABS에 대한 기본적인 틀만을 제시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발적 지침에 불과하며 이익공유의 실질적인 이행이 의문시 된다는 우려가 개도국을 중심으로 강하게 제기됨

실효성 있는 새로운 ABS 국제규범의 필요성이 대두

- 생물다양성 협약이 체결된 이후 일부 생물자원 보유국(원산지국)들은 자국 생물자원에 대한 접근통제, 해외반출 규제 등의 개별적인 국내법적 조치를 시행하였으나,
- 국내법적 조치들만으로는 이익공유가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이익 공유를 확실히 보장 할 수 있는 국제적 규범의 채택을 요구
- 생물자원이 풍부한 나라는 주로 개도국인 반면 생물자원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은 주로 선진국이 보유하고 있어, 선진국과 개도국 간 대립구도 형성

본 가이드라인

Bonn Guidelines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the Benefits arising out of their utilization (2002)

- 채택시기** • 2002. 4. 네덜란드 헤이그 (CBD 제6차 당사국 총회)
- 본가이드라인의 주요 특징**
 - 이용의 편이성과 실용성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당사국간의 자발적인 지침
 - 적용범위에 인간유전자원은 제외됨을 명시(나고야 의정서에는 미명시)
 -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 관련 프로세스 제공

3. 나고야 의정서 논의 경과



II. 나고야 의정서 개요

1. 명칭

생물다양성협약 부속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2. 구성체계

전문, 36개 조문, 1개 부속서로 구성

- 전문 : 의정서의 채택취지, 내용, 위임사항, 여타 협약과의 관계 등
- 주요조문 : 적용범위(제3조), 공평한 이익 공유(제5조), 생물유전자원의 접근(제6조), 의무준수체제(제15조~제17조) 등
- 부속서 : 금전적·비금전적 이익 종류 예시

3. 주요내용

생물유전자원 이용을 위한 접근(Access)

- 생물유전자원에 접근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생물유전자원의 제공국이 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통보승인(PIC)을 받아야 함
 - 접근(Access) : 생물유전자원의 향후 이용(연구·개발)을 위한 표본 채취 등 사전 활동을 의미
- 이를 위해 당사국들은 사전승인 대상 생물유전자원, 승인기관, 승인절차 등 사전통보승인에 관한 국내제도를 정비하여야 함
 - 토착지역공동체(ILC)가 사전통보승인 권한을 가진 경우 이를 국내법으로 명확히 규정하여야 함 (의정서 제6조 제2항 및 제3항 바호)

이익공유(Benefit-sharing)

- 이익공유는 생물유전자원 제공국과 이용자 간 체결한 상호합의조건(MAT)에 따라 실시
 - 당사국들은 상호합의조건(MAT)을 통해 이익이 공유되도록 입법·행정·정책적 조치 필요
 - MAT(Mutually Agreed Terms : 상호합의조건) :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의 내용 및 방법에 대해 제공자와 이용자가 상호합의한 조건을 의미
- 공유대상 이익에는 로열티, 접근료 등 금전적 이익과 기술이전, 공동연구 등 비금전적 이익을 모두 포함

적용범위(Scope)

- 적용대상
 - 유전자원 및 토착지역공동체(ILC)가 보유한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 토착지역공동체(ILC: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 CBD 전문(Preamble) 및 제8조(j)호에 의하면 전통적으로 생물자원에 의존하고 그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해 삶을 영위하는 지역 공동체를 의미
- 공간적 적용범위
 - 자국 영토를 벗어난 공해, 혹은 남극 등지에 존재하는 생물 유전자원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 긴급 상황 하에서의 특별규정
 - 인류 보건, 동·식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긴급 상황 발생시 병원균(Pathogene) 등 관련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절차를 간소화
 - 신종플루 등 전염병 발생시 신속한 대처(백신개발 등)에 필요한 유전자원 (병원균)에 대한 접근 절차를 간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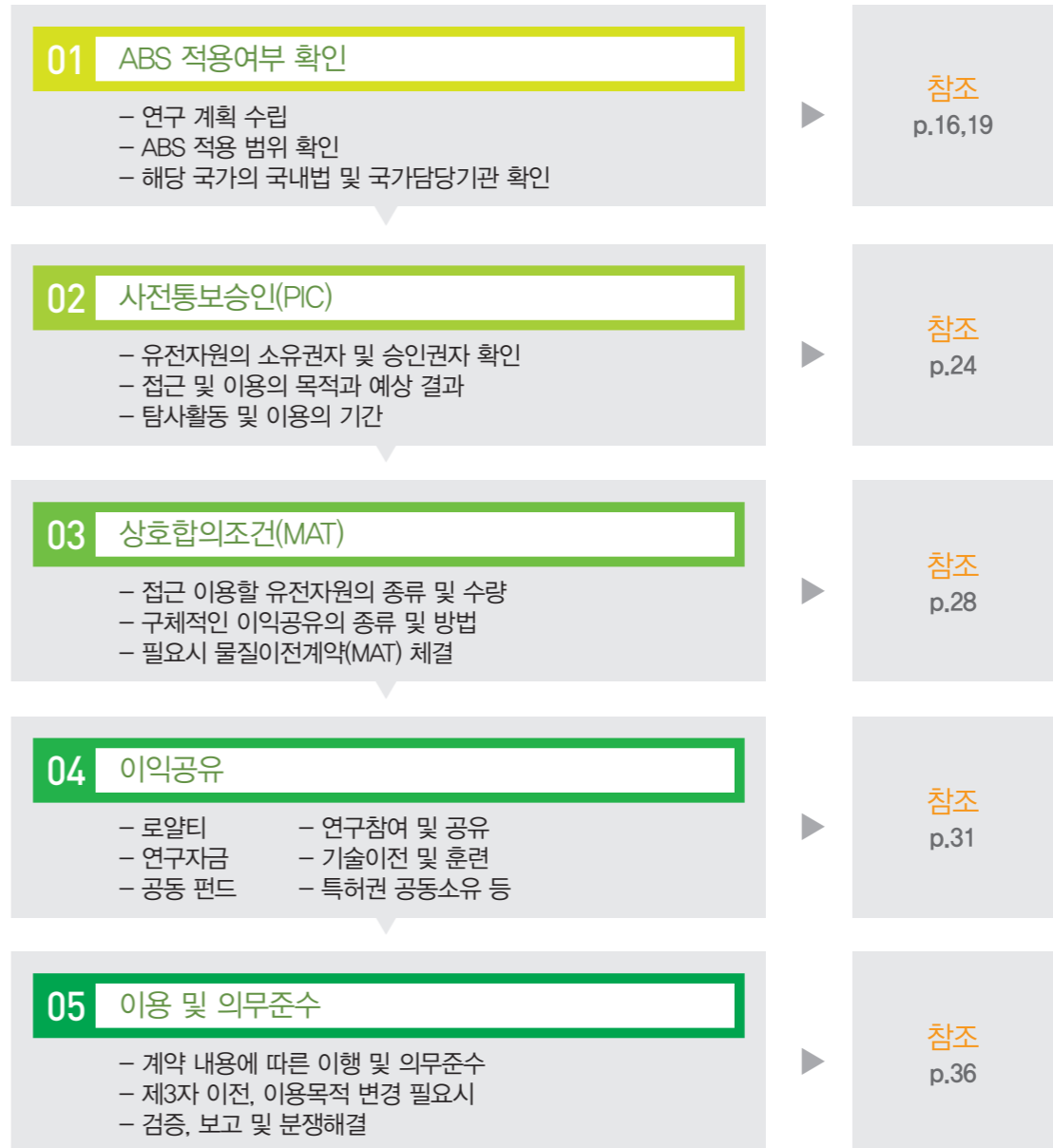
Ⅰ 의무준수(Compliance)

- 각 당사국은 자국민이 외국의 생물유전자원을 획득하여 이용할 때 해당 국가의 ABS 관련 법규에 따른 PIC 획득 및 MAT 체결을 요구하는 입법·행정·정책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유전자원 이용 상황을 점검하는 기관(Checkpoint)을 1개소 이상 설치
 - PIC, MAT, 유전자원의 출처, 이용 등 정보수집
- 유전자원 제공국은 PIC와 MAT에 근거하여 국제적으로 인증된 의무준수 인증서(Internationally recognized certificate of compliance) 발급
 - PIC 획득 및 MAT 체결사항을 정보공유체계(ABS Clearing-House Mechanism)에 등록하면 국제인증서로 인정

Ⅱ 기타사항

- 적용시점 : 의정서 발효 이후
 - 다만, 개도국을 배려하기 위해 포함된 세계 다자간 이익 공유 체계(나고야 의정서 제10조)를 통해 의정서 발효 이전에 획득하여 보전 중인 유전자원(Ex-situ collection)의 이용에 대한 소급적용 문제가 다시 논의될 수도 있음
 - 세계 다자간 이익 공유 체계는 제2차 정부간위원회(2012. 4월)에서 논의예정
 - Ex-situ collection : 생물유전자원을 자연서식지 이외에서 보유
- 발효시기
 - 2011.2.2부터 뉴욕 유엔본부에서 1년간 서명 개방, 50개국 비준 후 90일째 되는 날에 발효
 - 이후 비준한 국가의 경우, 비준서 기탁 후 90일째에 발효
 - 서명, 비준 시에는 일부의 적용배제와 변경은 금지됨
- 의사결정기관(제26조) : ABS 의정서 당사국회의(MOP : Meeting of the Parties)
- 사무국(생물다양성협약 제24조 근거) :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

III. 나고야 의정서 주요 절차



IV. 나고야 의정서 주요 쟁점 Q&A

1. ABS 관련 주요 용어

Access (접근)

유전자원의 샘플을 획득 하는 행위 및 유전자원을 수집 · 이전 · 이용하는 일련의 절차 및 유전자원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Benefit-Sharing (이익공유)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얻어진 이익을 상호 합의된 조건(MAT)에 따라 유전자원의 제공자와 공유하는 것을 의미하며 금전적 비금전적 이익을 모두포함(CBD 제15조 제7항)

Biopiracy (생물해적행위)

특정 국가의 유전자원을 사전승인 또는 공정한 이익 공유 없이 이용하는 경우로 Misuse 또는 Misappropriation으로 사용되기도 함

Biotechnology (생명공학)

특정 용도를 위하여 제품이나 제조공정을 개발하거나 변형시키기 위하여 생물계 · 생물체 또는 그 파생물을 이용하는 기술적 응용을 의미(CBD 제2조)

Biological Resources (생물자원)

인류를 위하여 실질적 또는 잠재적으로 사용되거나 가치가있는 유전자원 · 생물체 또는 그 부분 · 개체군 또는 생태계의 그 밖의 생물 구성요소를 포함(CBD 제2조)

Country of origin of genetic resources (유전자원 원산국)

유전자원을 현지 내 상태(in-situ conditions)에서 보유하고 있는 국가(CBD 제2조)

Country providing genetic resources (유전자원 제공국)

야생 또는 사육된 종을 포함하여 현지 내(in-situ)에서 수집하였거나 그 국가가 원산국 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현지 외(ex-situ)로부터 취득한 유전자원을 제공하는 국가(CBD 제2조)

Derivatives (파생물)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지 않더라도 생물자원 또는 유전자원의 유전자 발현 또는 대사작용에서 비롯되어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생화학적 화합물을 의미(나고야 의정서 제2조)

Ex-situ conservation (현지 외 보전)

생물다양성의 구성요소를 그 자연 서식지 외에서 보전하는 것(CBD 제2조)

Genetic material (유전물질)

기능적 유전단위를 포함하는 식물 · 동물 · 미생물 또는 그 밖의 기원의 물질(CBD 제2조)

Genetic resources (유전자원)

실제적 또는 잠재적 가치를 가진 유전물질(CBD 제2조)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토착지역공동체)

전통적으로 생물자원에 의존하고 이익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해 삶을 영위하는 사회를 의미(CBD 전문 및 제8조(j)호)

In-situ conditions (현지 내 상태)

유전자원이 생태계 및 자연서식지에서 존재하는 상태로서 사육종 또는 배양종의 경우 그들의 고유한 특성이 발현되도록 한 환경에서 유전자원이 존재하는 상태(CBD 제2조)

Material Transfer Agreement (MTA, 물질이전계약)

유전자원의 이전(transfer)과 같은 물질이전이 수반되는 경우에 유전자원의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에서 통상적으로 체결되는 계약의 유형을 의미

Mutually Agreed Terms (MAT, 상호합의조건)

유전자원의 “접근” 과 “이익 공유”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해 제공자와 이용자가 상호간 합의한 조건을 의미(CBD 제5조 제4항, 제5조 제7항)

Prior Informed Consent (PIC, 사전통보승인)

유전자원에 접근(access)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해당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승인할 권한이 있는 기관 이해관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승인을 받아야함(CBD 제15조 제5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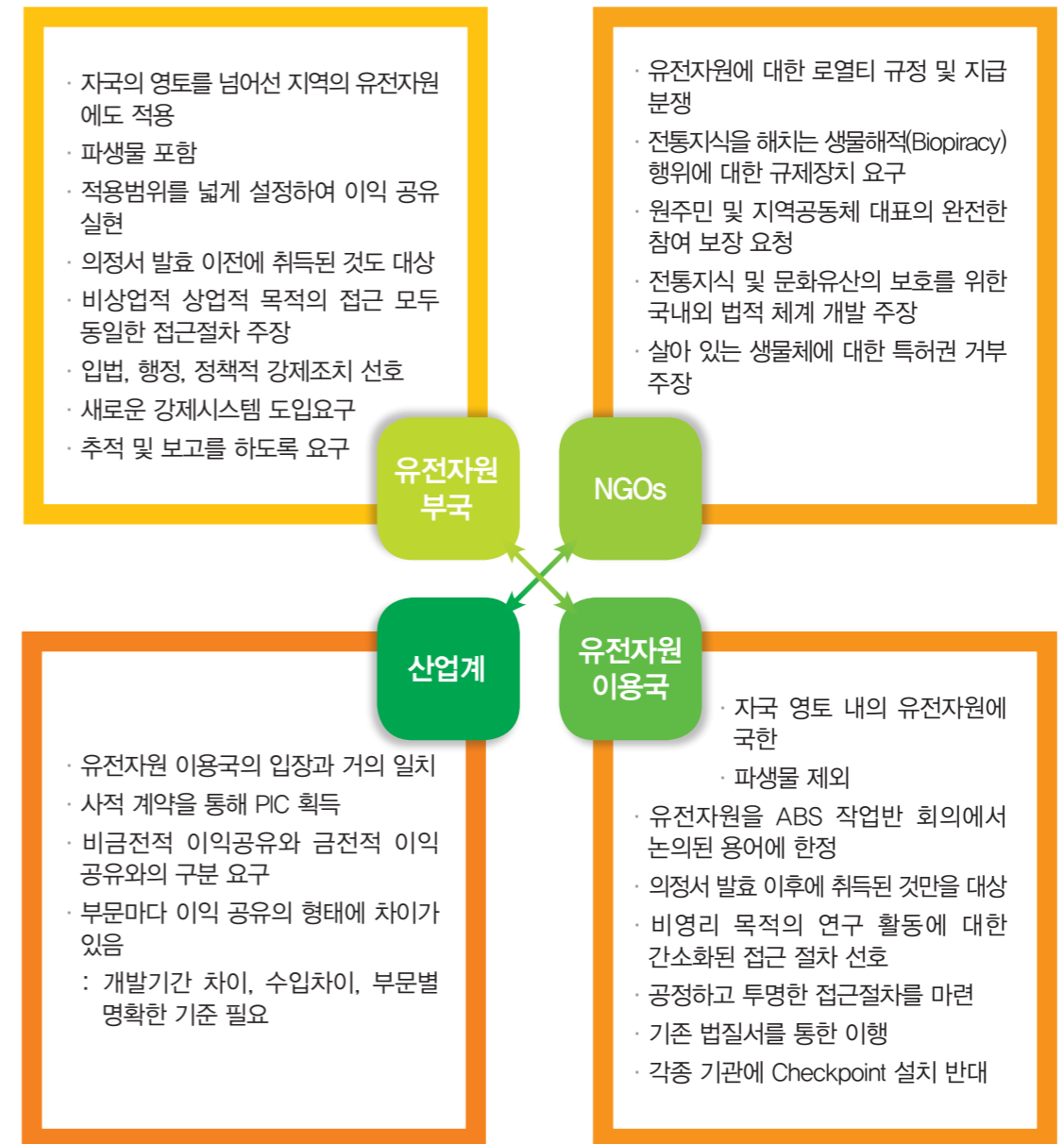
Traditional Knowledge (전통지식)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에 적합한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취하여 온 토착·지역사회의 지식, 혁신적 기술 및 관행(CBD 제8조 (j)호)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유전자원의 이용)

생물다양성협약 제2조에 정의된 생명공학의 적용을 통한 것을 포함한 유전자원의 유전적 그리고/또는 생화학적 구성에 관한 연구, 개발을 수행(나고야 의정서 제2조)

2. 나고야 의정서 주요 쟁점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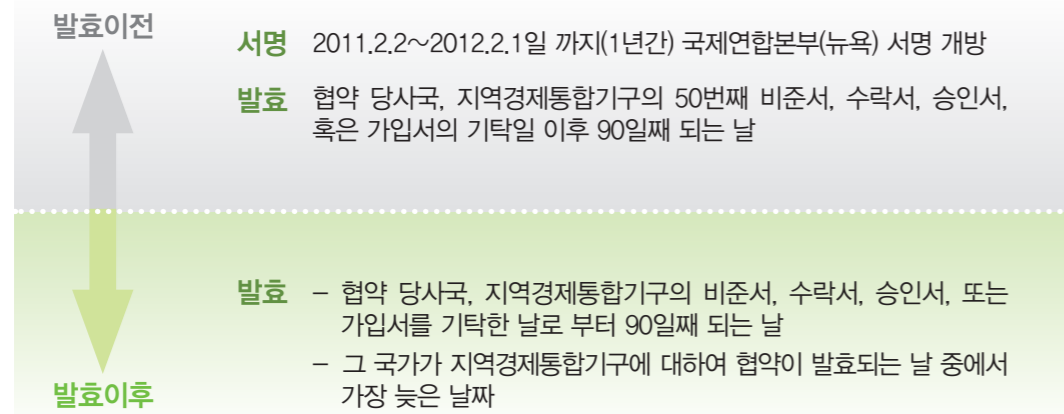


3. 발효시점

관련 규정

- 나고야 의정서 제33조 발효(Entry into force)
- CBD 협약 제15조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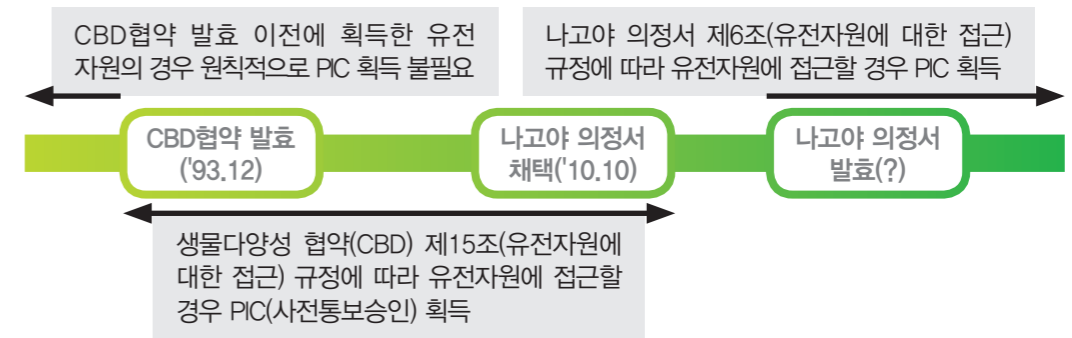
기본원칙



- 서명, 비준 시에는 나고야 의정서 일부의 적용배제와 변경은 금지됨
 - 의사결정기관(나고야 의정서 제26조) : 나고야 의정서 당사국회의(MOP : Meeting of the Parties)
 - 사무국(나고야 의정서 제28조) : 생물다양성협약에 의해 설치된 사무국이 의정서 사무국 역할
 - ABS 당사국 서명현황(2011.12.29 현재) : 69개국 서명(가봉, 가나, 알제리, 브라질,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콜롬비아, 에콰도르, 말리, 과테말라, 멕시코, 르완다, 수단, 세이셸, 예멘, 인디아, 인도네시아, 일본, 페루, 노르웨이, 파나마, 남아프리카, 튀니지, 스위스, 모리타니, EU 등) 및 1개국 비준(가봉)
 - 추가정보 : www.cbd.int/abs/nagoya-protocol/signatories

쟁점사항

- 시간적 적용시점 : 나고야 의정서 발효 이후 vs 이전
 - 의정서 상에 적용시점에 대한 관한 언급이 없음
 - 의정서 상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 국제법(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원칙에 따라 의정서 발효이전에 일어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음
 - 다만, 개도국을 배려하기 위해 포함된 “다자간 이익 공유 체계”(나고야 의정서 제10조) 및 의정서 적용범위(제3조 : 생물다양성협약 제15조의 적용범위 내에 유전자원)를 통해 의정서 발효 이전에 획득하여 보전 중인 유전자원(Ex-situ collection)의 이용에 대한 소급적용 문제가 다시 논의될 수도 있음



Q1 나고야 의정서 채택('10.10) 이후 의정서가 발효되었는지? 발효가 되지 않았다면 발효가 되기 전 까지 유전자원에 접근할 경우 나고야 의정서 적용을 받는지?

A1 나고야 의정서의 법적 효력은 생물다양성협약의 당사국 혹은 지역경제통합기구의 50번째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혹은 가입서의 기탁일 이후 90일째 되는 날 발효가 되며, 만일 의정서가 발효된 이후에 의정서를 비준·수락 또는 승인하거나 의정서에 가입하는

국가나 지역경제통합기구에 대해서는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90일째 되는 날이나 그 국가가 지역경제통합기구에 대하여 협약이 발효되는 날 중에서 가장 늦은 날짜에 발효가 됨. 따라서 국가별로 의정서 효력의 발생일이 다를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유전자원에 접근하고자 하는 국가의 책임기관에 문의하거나 ABS-CHM을 통해 확인할 것. 또한 의정서 발효이전의 유전자원의 접근은 원칙적으로 의정서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CBD 협약 체결이후 의정서 발효 이전까지의 행위에는 기존 CBD협약 15조(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

Q2 생물약품 원료로 나고야 의정서 발효 이전에 구매하여 현재 이용을 목적으로 연구 중인 유전자원도 의정서 적용대상인지?

A2 원칙적으로 조약법(제네바 조약법)은 소급적용을 금하고 있으므로 나고야 의정서 발효 이전에 접근된 유전자원은 나고야 의정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나 나고야 의정서 발효 이전에 접근 및 취득이 이루어진 유전자원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 시점에서 계속적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새로운 용도로 추가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나고야 의정서가 적용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 그리고 CBD협약 발효 이후부터 나고야 의정서 발효이전에 접근 및 취득이 이루어진 유전자원의 경우에는 CBD협약 제15조(유전자원의 접근)규정에 따라 PIC(사전통보승인)획득 및 CBD협약 제19조(생명공학의 관리 및 그 이익의 배분)에 따라 이익 공유를 하여야함. 또한 유전자원 제공국은 사전통보승인을 얻거나 동의를 구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유전자원 및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이용에 따른 이익 공유를 규정하고 있는 의정서 제10조(세계 다자간 이익 공유 체제)를 근거로 CBD협약 발효 이전에 접근 및 취득이 이루어진 유전자원의 계속적 이용 또는 새로운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음. 나아가 유전자원 이용자는 유전자원 확보 당시의 유전자원 제공국의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해야 하며 현존하는 입법적, 행정적 또는 정책적 조치 등을 고려하여 유전자원을 이용하여야 할 것.

4. 적용대상

관련 규정

- 나고야 의정서 제3조 범위(Scope)
- 나고야 의정서 제2조 용어 사용(Use of terms)

| 기본원칙

- 적용대상 : 생물다양성협약 제15조 적용범위 내의 유전자원과 그리고 유전자원과 연관된 전통지식
 - 자국 영토를 벗어난 공해, 혹은 남극 등지에 존재하는 생물유전자원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 쟁점사항

- 적용대상 유전자원 : 파생물(Derivatives) 및 제품(Products)의 포함여부
 - 의정서 제2조 용어정의에 파생물에 정의가 포함되어 있으나, 용어정의를 제외한 다른 조항에 파생물에 대한 언급이 없음
 - 유전자원의 이용(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의 개념정의를 간접적으로 파생물을 포함(유전자원의 유전적 그리고/또는 생화학적 구성성분에 관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가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음
 - 유전자원의 이용(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 협약 제2조에 정의된 생명공학의 적용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유전자원의 유전적 그리고/또는 생화학적 구성에 관한 연구, 개발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나고야 의정서 제2조)
 - ABS의 범위가 파생물 및 제품까지 확대될 경우, 각각의 이용에 대해서도 새로운 PIC 및 MAT가 요구되며 이익공유의 부담을 지게 됨

- 또한 파생물 및 제품자체가 연구과정의 단순한 중간산물로서 얻어진 경우에도 후속 연구를 위해 PIC 및 MAT가 요구되는 경우가 발생되어짐
- 근본적으로, 파생물의 정의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제품등의 적용여부는 제공국의 국내법에 따라 달리 결정되어 질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유전자원 제공국 ABS 관련 국내법의 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음

각국의 파생물 정의

- 필리핀 「생물자원 및 유전자원 접근에 관한 규제」 (대통령령 제247호) (1995년)
 - 「파생물」이란, 혈액, 기름, 수지, 유전자, 종자, 포자, 꽃가루 등 야생생물로부터 추출한 물질
- 필리핀 「야생생물자원과 그 서식지 보전보호 및 해당보전보호 등을 위한 예산할당에 대하여 정한 법률」 (공화국법 제9147호)(2001년)
 - 「부산물 또는 파생물」이란, 야생생물로부터 얻어낸 부분, 또는 야생생물로부터 추출해낸 물질에서 미처리한 것, 혹은 처리한 형태의 것을 말함. 여기에는 박제, 식물표본이 포함됨
- ASEAN 「생물자원 및 유전자원 접근에 관한 ASEAN 공조(틀)협정(안)」 (2000년)
 - 파생물-생물자원 및 유전자원으로부터 얻어낸 것을 말함, 예로, 혈액, 기름, 수지, 유전자, 종자, 포자, 꽃가루 등 이외에, 조작한 화합물, 또는/그리고 유전자를 포함하거나, 이러한 것에 의해 일부 형성되어 지거나, 또는 이러한 것으로 부터 유래된 산물을 뜻함
- 세계 17의 식물원 「식물원을 위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공통지침」 (1999년)
 - 「파생물」에는 유기체를 시작으로, 유전자원 및 그 자손에 근거 혹은 유래하는, 개선된 추출물 혹은 개선되지 않은 추출물, 및 화합물 또는 화학구조물을 포함하지만, 그것만을 한정하는 것은 아님

Q1 오렌지, 석류등 상품을 식용을 목적으로 수입할 경우 그리고 이러한 상품을 식용을 목적으로 가공 처리하는 경우 나고야 의정서 적용대상인지?

A1 나고야 의정서 제3조(범위)에서는 의정서의 적용범위를 생물다양성 협약의 적용범위 내의 유전자원과 그 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또한 제2조 용어정의에서는 “유전자원의 이용”을 유전자원의 유전적 그리고/또는 생화학적 구성에 관한 연구, 개발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따라서 단순 식용을 목적으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와 이러한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여 단순 식용목적의 가공식품 제조에 이용할 경우 유전자원 이용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나고야 의정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임. 하지만 수입된 농산물에서 유용성분을 추출(예, 고추 캡사이신 등)하여 의약품 개발등에 이용할 경우에는 의정서 적용대상임. 또한 각 당사국은 나고야 의정서 국내 이행법률을 제정하는데 있어 의정서 보다 강력한 보호체계를 구축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개별각국의 국내법 확인 및 각 부처에서 운영 중인 help desk를 통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것.

Q2 ABS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해외생물자원으로부터 획득한 유용한 유전정보를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transgenetic plant 등)을 개발하고자 할 경우 ABS 적용여부 및 이익공유의 대상은?

A2 나고야 의정서에는 구체적인 적용범위가 정해지지 않았으나 의정서 제2조 용어 정의에는 “유전자원의 이용”을 협약 제2조에 정의된 생명공학의 적용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유전자원의 유전적 그리고/또는 생화학적 구성에 관한 연구, 개발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해외생물자원으로부터 획득한 유전정보(게놈정보, SNP 정보 등)를 이용하여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 연구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나고야 의정서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이익공유의 대상은 자원의 원산지 국가로서 그러한 자원을 제공하는 당사국으로부터 생물자원 자체를 확보(예, 특정병원체에 우수한 저항성을 보이는 식물체)하여 유용유전자 발굴 후 이를 이용하여

형질전환식물(transgenic plant)을 만드는 경우 이익 공유는 자원의 원산지국에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협약에 따라 생물자원을 획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제공국의 특정기업이 유용식물로 부터 유용유전자를 발굴하여 소유하고 이를 제공하는 경우 유전자원 제공국이 되며 이익 공유는 제공자인 기업과 공유해야하나 이익 공유관련 생물자원 제공국과 이용국간의 의견차이(자원의 원산지 국가로서 그러한 자원을 제공하는 당사국 vs 협약에 따라 유전자원을 획득한 당사국)가 있으므로 유전정보 이용 시 당사국의 국가책임기관 등을 통해 국내법을 확인하거나, MAT 체결시 자원제공국(자)과 계약서상에 이 부분을 분명히 명시하거나, 또는 국내 관련 부처에서 운영 중인 ABS help desk에 문의할 것.

※ 생명공학(CBD 협약 제2조) : 특정 용도를 위하여 제품이나 제조공정을 개발하거나 변형 시키기 위하여 생물계 생물체 또는 그 파생물을 이용하는 기술적 응용을 의미

Q3 국외의 생물자원으로부터 얻은 생화학적 화합물을 수입하는 경우 ABS 적용대상이 되는지?

A3 나고야 의정서 제3조 범위에는 나고야 의정서가 CBD 협약 제15조의 적용범위 내의 유전자원과 그 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에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음. 하지만 의정서 제2조 용어에는 파생물의 정의가 기술되어 있으며 또한 유전자원의 이용의 용어 정의에도 생화학적 구성(Biochemical composition)을 언급함으로써 파생물(Derivatives)이 의정서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음. 이는 향후 제공국의 국내법등에 따라 달리 결정되어 질 수 있으므로 파생물에 대한 접근 시 반드시 당사국의 연락기관 혹은 국가책임기관을 통해 파생물 적용여부를 확인하거나 관련 부처에서 운영 중인 ABS help desk 에 문의할 것.

Q4 새로운 축산품종을 개발할 목적으로 해외로부터 가축의 정자(유전자원)을 수입하는 경우 ABS 적용대상인지?

A4 원칙적으로 상품(예를 들어 식용목적으로 오렌지, 바나나 등을 구매하여 국내 판매하는 경우)은 의정서 적용대상이 아님. 하지만 해외로부터 내병성이 높은 식물, 동물 등의 종자, 정자 등을 수입한 후 새로운 품종을 개발할 경우 ABS의 적용대상임. 즉 해외로부터 상품화된 화훼종자를 구매(원산지: 남아공, 제공국: 미국의 다국적 종자회사) 할 경우 원산지국으로부터 PIC획득 및 MAT를 체결할 필요는 없으나 종자를 이용하여 재배한 후 본래의 수입 목적(예. 정원용, 장식용등)과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접목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품종 개발)할 경우에는 ABS 적용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유전자원에 접근하고 자 할 경우 먼저 상대국(원산지국 혹은 제공국)에 PIC를 획득 및 MAT체결 여부를 문의하거나 각 부처에서 운영 중인 help desk로 문의할 것.

Q5 국내 자생생물을 대량생산을 목적으로 해외로 반출한 후 추출물(파생물)의 형태로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나고야 의정서 적용대상인지?

A5 나고야 의정서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선진국(유전자원 이용국)과 후진국(유전자원 제공국)간의 해석상의 차이가 있음. 선진국의 경우 파생물의 접근은 나고야 의정서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인 반면 후진국은 파생물에 대한 접근, 이익 공유, 의문준수 등이 유전자원과 동일하게 적용받아야 한다는 견해임. 만약 국내 자생생물을 국외로 반출한 후 계약재배, 현지재배, 등의 방법으로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이익 공유의 주체와 관련하여서는 논란의 소지(원산지국 vs 재배국)가 있으며 또한 반출한 생물자원이 국내뿐만 아니라 계약재배 혹은 현지재배를 하고 있는 국가에도 분포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국가 간의 분쟁(원산지 논란, 월경성 상황: Transboundary situations)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help desk에 문의할 것.

5. 사전통보승인(PIC)

- 관련 규정**
- 나고야 의정서 제6조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Access to genetic resources)
 - 나고야 의정서 제7조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 (Access to trans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 CBD 협약 제15조 제1항, 제2항, 제5항
 - 본가이드라인 para. 26~28, 33, 34, 36, 38~40

I 기본원칙

- 유전자원에 접근하고자 하는 당사국은 제공국의 사전통보승인을 득해야 함
- 토착지역공동체가 보유하고 있는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대해 접근하고자 하는 당사국은 해당 토착지역공동체의 참여를 바탕으로 사전통보승인을 득해야 함

I PIC 발행의 주체

- ① 유전자원의 소유자 또는 관련 전통지식의 보유자
 - 이용하려는 유전자원의 소유권자(제공국 혹은 원산지국) 또는 전통지식의 보유자(토착지역공동체가 보유한 전통지식만을 인정)로부터 PIC를 획득
- ② 유전자원 제공국 정부의 담당기관
 - 국가 책임기관 등 담당 기관이 정해져 있을 경우, PIC와 관련한 일체의 절차를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문서화하는 것이 바람직
 -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로부터 PIC 획득 여부 확인
- ③ 토착지역공동체(ILC)를 포함한 기타 이해 관계자
 - 국가에 따라서는 유전자원 또는 관련 전통지식에 대해 PIC를 부여할 기타 이해관계자(토착지역공동체 등)가 존재 할 수 있으며 국내법 등과 무관한 관습법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이해관계자

I PIC 획득을 위한 절차

- ① PIC 획득을 위한 관련 서류 제출처 혹은 관련 내용 문의를 위한 국가책임 기관(Competent National Authority) 확인
 - 당사국의 국가책임기관 현황정보는 www.cbd.int/doc/lists/nfp-abs-cna.pdf
- ② 신청서 서식의 유·무, 필요한 기재항목 확인(예: 목적, 기간, 자원내용, 자금 등)
- ③ PIC 획득을 위한 추가적인 요구조건 또는 필요사항 확인

Q1 나고야 의정서 발효 이전에 취득한 유전자원에 대해서, 새로이 PIC를 취득할 필요가 있는지?

A1 나고야 의정서 발효이전에 획득한 유전자원 이라면, 조약에 근거한 의무는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 또한 유전자원의 제공국이 본 조약을 비준한 경우에는 그 발효일 이전에, 해당국으로부터 취득한 것에 대하여서도 조약에 근거한 의무는 없는 것으로 고려되어짐. 하지만 유전자원 제공국의 법령, 행정 조치 등에 따라 별도의 결정(판단)이 있는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CBD 협약 이후 의정서 발효이전에 접근한 유전자원의 취급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Q2 유전자원이 중개업자(Commercial Intermediary)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용자에게 제공 되었을 경우는 어떻게 PIC 취득을 확인 할 수 있는지?

A2 중개업자를 통해 유전자원을 취득할 경우, 자원제공국의 법령, 행정조치 등 절차에 따라 유전자원을 취득했는지 유무와 또한 취득한 유전자원을 제3자인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권한이 중개업자에게 부여되어 있는가를 확인할 것.

- 해당 중개업자로부터 PIC 획득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의 사본 확보
- 중개업자가 PIC를 획득했다는 확인서를 중개업자로부터 확보
- 계약서 작성 시 중개업자로 하여금 자신이 자원제공국의 법령, 행정조치에 따라서 유전자원을 취득했다는 확인 조항 삽입
- 추가적으로 중개업자에게 유전자원을 제공한 자원제공국이, PIC에 대하여 국내법령·행정 조치 등에서 어떤 절차를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중개업자에게 확인과는 별도로 독자적으로 조사(검토) 할 것

Q3 컬처 컬렉션(배양체)등(총칭해서 서식지외 컬렉션이라고 불림)으로부터 유전자원을 취득한 경우 PIC를 획득할 필요가 있는지?

A3 서식지외 컬처 컬렉션(ex-situ culture collection)의 경우에도 나고야 의정서 적용대상임. 컬처 컬렉션 등이 소재한 국가의 법령이 PIC 취득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는 당연히 PIC 취득이 필요하다. 또한 해당 서식지외 컬렉션이 제3국으로부터 협약에 따라 유전자원을 획득한 경우에는 제공국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며 이용자는 이러한 기관으로부터 PIC를 획득하여야 함.

Q4 유전자원 접근을 위해 상대국으로부터 PIC를 발급받고자 할 경우 어떤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지?

A4 나고야 의정서에는 PIC(사전통보승인)을 획득하기 위한 별도의 획득절차 및 정보 제출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음. 본가이드라인에는 정보 제출과 관련하여 리스트가 예시되어 있으나 이는 제공국의 국내 여건에 따라 달리 결정되어 질 수 있으니 유전자원 접근 부여 여부를 결정하는 제공국의 국가책임기관에 확인하거나 ABS 정보공유체계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것.

예시) 본가이드라인 사전통보승인 획득을 위한 정보 제출 리스트

- (a) 신청자/수집자의 법적 자격 및 소속, 신청자가 기관인 경우에는 담당자
- (b) 접근을 요청하는 유전자원의 종류와 양
- (c) 활동 개시일 및 기간
- (d) 지리적 탐사 범위
- (e) 접근을 부여하는 대상의 상대적인 비용 및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 접근활동이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평가
- (f) 의도한 이용에 관한 정확한 정보(예 : 분류학, 수집, 연구, 상업화)
- (g) 연구개발이 수행되는 장소의 지정
- (h) 연구개발을 시행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

- (i) 연구개발을 공동 수행하는 지역기관의 지정
- (j) 참여 가능성이 있는 제3자
- (k) 수집, 연구 목적 및 예상 성과
- (l) 유전자원의 상업적 또는 기타 이용에서 발생하는 파생물, 제품의 이익을 포함하여 유전자원의 접근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이익의 종류/형태
- (m) 이익공유 조치의 지정
- (n) 예산
- (o) 비밀 정보의 취급

Q5 토착지역공동체(ILC)가 보유한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접근하고자 할 때 누구로 부터 PIC를 획득해야 하며 MAT를 체결해야 하는지?

A5 나고야 의정서 제7조(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에 따르면 토착지역 공동체들이 보유한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의 사전통보승인(PIC)을 부여할 권한은 국내법에 따라 결정되어지므로 토착지역공동체가 소속된 당사국의 국가책임기관에 PIC 발급 승인의 주체에 대해 문의할 것. 또한 의정서 제5조 5항은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은 MAT에 근거하여 토착지역공동체와 공유하여야 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는데, MAT의 체결주체 역시 토착지역공동체가 소속된 당사국의 국가책임기관 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음. 나고야 의정서 제12조(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는 각 당사국이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잠재적 이용자에게 전통지식 이용으로부터 발생되어지는 이익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ABS Clearing-House를 통해 열람 가능한 사람들을 포함하여 이용자의 의무를 통지할 체제를 마련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체제를 통하여 각종 의무사항을 미리 확인할 것.

6. 상호합의조건(MAT)

관련 규정

- 나고야 의정서 제5조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 공유 (Fair and equitable benefit-sharing)
- 나고야 의정서 제7조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 (Access to trans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 나고야 의정서 제18조 상호합의조건 준수 (Compliance with mutually agreed terms)
- CBD 협약 제15조 제2항, 제4항, 제7항, 제8조(j)호
- 본가이드라인 para. 41~43, 45, 49, 부속서 I

기본원칙

- 이용자와 제공자간의 합리적인 기간 내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협상을 통한 합의가 원칙
- 협상 추진 시 상대국의 법령, 행정적 조치, 상거래법, 상거래관습 등을 충분히 파악

MAT 기재내용 예시

- 이용하려는 유전자원의 종류, 수량, 목적, 기간 등
- 공유하는 이익의 종류, 방법 등
- 특허출현 가능 여부 및 특허 출현시 원산지 기대 여부 등
- 분쟁해결 절차

물질이전계약(MTA : Material Transfer Agreement)

- 유전자원의 이전(Transfer)이 수반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유전자원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에 합의된 조건을 MTA의 형태로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MAT의 실질적인 이행방안으로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음
 - 기타 체결 형태 : 기밀유지계약, 기술이전계약, 라이선스계약 등
- MTA는 실질적으로 MAT의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본가이드라인 부속서 I 의 MAT 기재 내용 예시 참조(Q2 참조)

Q1 자원제공국 측이 제시한 MAT를 따르지 않으면 유전자원은 이전할 수 없는지?

A1 상대국 법령상의 강행규정, 의무적 행정조치 등에 따라 MAT의 내용이 결정된 경우 그 내용을 수용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MAT의 체결에 앞서 상대국 법령, 행정조치 등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법령, 행정조치 등에 의거하지 않고, 계약 상대방이 독자적 방침으로 표준적 MAT를 정해 이를 그대로 수용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MAT의 내용을 강제할 법적 행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그와 같은 MAT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상대방이 제시한 MAT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부당하거나 불이익한 조건들이 발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추가적인 협상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Q2 자원원산지국 혹은 제공국과 MAT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어떤 항목이 계약서 체결 시 적용되는지?

A2 나고야 의정서에는 MAT 체결 시 고려되어야 항목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의정서 제18조(상호합의조건의 준수) 1항에 분쟁해결 관련 조항을 상호합의조건에 포함 시키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본가이드라인에서 상호합의조건(MAT)과 관련된 주요 항목에 대한 예시를 다루고 있음.

※ 나고야 의정서 제18조 제1항

- (a) 모든 분쟁 해결 절차의 귀속 관할
- (b) 적용 가능한 법률, 그리고/또는
- (c) 조정 또는 중재와 같은 대안적 분쟁 해결책

※ 본가이드라인 상호합의조건 항목 예시

- (a) 유전자원의 종류 및 양, 지리적/생태적 활동범위
- (b) 물질 이용 가능성에 대한 모든 제한
- (c) 원산국의 주권적 권리의 인정
- (d) 합의에서 지정한 다양한 분야의 능력배양
- (e) 특별한 상황에서 합의조건(예 : 용도 변경)의 재협상 여부에 관한 조항
- (f) 유전자원의 제3자에게 양도 가능여부 및 그 경우 부과되는 조건. 예를 들면, 상업화와 무관한 분류학 및 계통학 연구를 제외하고 제3자가 유사 협정을 체결을 보장하지 않고 제3자에게 유전자원을 양도 가능한지 여부
- (g) 토착·지역사회의 전통지식, 혁신 및 관행의 존중, 보존 및 유지 여부, 전통 관행에 따른 생물자원의 관습적 이용이 보호되고 장려되는지 여부
- (h) 비밀정보의 취급
- (i) 유전자원의 상업적 이용 및 기타 이용과 그 파생물 및 제품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에 관한 규정

7. 이익 공유(Benefit-Sharing)

관련 규정

- 나고야 의정서 제1조 목적(Objectives)
- 나고야 의정서 제3조 범위(Scope)
- 나고야 의정서 제5조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공유(Fair and equitable benefit-sharing)
- 나고야 의정서 제10조 세계 다자간 이익 공유 체제(Global multilateral benefit-sharing mechanism)
- 나고야 의정서 제12조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 나고야 의정서 제16조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국내법 또는 규제 요건 준수(Compliance with domestic legislation or regulatory requirements on access and benefit-sharing for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 CBD 제1조 제7항, CBD 제8조(j)호
- 본가이드 라인 para.45-50. 부속서 II

I 기본원칙

- 나고야 의정서 제1조 목적에 이익공유가 의정서의 목적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이익'에 대한 별도의 정의는 없음
- 「유전자원 이용으로부터 생성되는 이익 공유」를 고려할 때 공유의 대상은 금전적, 비금전적 이익을 모두 포함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상호합의조건(MAT : Mutually Agreed Terms)을 통해 결정

I 이익공유의 유형

- ① 금전적 이익 : 선불지급, 마일스톤(Milestone) 지급, 로얄티 등
 - ② 비금전적 이익 : 연구개발 성과의 공유, 교육훈련, 기술이전 및 관련 지적재산권의 공동 소유 등
- 월경성 상황 혹은 사전통보승인을 얻거나 동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유전자원 및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이용에 따른 이익 공유는 세계 다자간 이익 공유 체계(Global Multilateral Benefit-Sharing Mechanism)에서 논의 (나고야 의정서 제10조)

| 이익공유의 시기

- 접근(Access)단계에서부터 자료공유, 기술이전 등의 이익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연구의 성과물을 전제하는 것이 아님
- 의정서에는 이익공유의 시기에 대해 별도의 규정은 없으며 본가이드라인에는 이익공유의 시기(단기·중기·장기) 및 기간을 명확히 규정할 것을 명시

| 유의사항

- 상대국의 법령, 행정조치 사항 등에 대한 확인
 - 계약 상대국이 보유하고 있는 ABS 관련 법률, 행정조치 외에도 상거래 관습 등에 유전자원 이용으로부터 발생되어지는 이익의 공유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
- 이익공유의 구체적 방법에 대한 확인
 - 계약 체결 시 이익공유의 방법(금전적 vs 비금전적)과 이익의 범위(개발비용을 포함한 제품비용 vs 순이익)가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할 것
- 이익공유의 배분방법에 대해 논의
 - 계약당사자의 상품개발에 대한 기여도등을 고려하여 계약 체결 시 이를 분명히 해야 함

Q1 유전자원 관련 전통적 지식을 이용하여 연구개발을 하고 싶은데, 이익 공유는 누구에게 어떻게 하면 됩니까?

A1 나고야 의정서 제7조에 의하면 국내법에 따라 토착지역공동체가 보유하고 있는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접근하고자 할 경우 토착지역공동체(ILCs)의 사전통보승인(PIC) 또는 승인과 참여가 요구되며 나고야 의정서 제5조 5항에 의하면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은 상호합의조건에 따라 그러한 지식을 보유하는 토착지역공동체들과 공유되어야 함. 토착지역공동체와 이익을 공유하기 위하여 MAT를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 상대국의 국가연락기관, 국가책임기관 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MAT의 체결주체가 누구인지를 확인한 후 MAT의 협상 및 체결과정을 진행하여야 할 것.

Q2 해외로부터 유전자원을 획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할 경우한 후 발생한 이익 공유는 1회 또는 지속적으로 제공하는지?

A2 이익 공유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들이 사적자치에 따라 결정하게 되므로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이익공유의 방법을 자국의 국내 ABS 국내법으로 규정해 두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유전자원 원산지국(제공국)의 ABS 국내법의 내용을 확인하고 또한 제품 개발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특허등록 등을 대비하여 사전에 MAT체결과정에서 미리 향후 특허출원 계획의 유무 등을 논의하는 것이 일반적임. 유전자원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공유는 1회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전자원 제공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임.

Q3 원산지가 미국인 유전자원을 중국으로부터 구입하여 제품개발 등을 개발 할 경우 이익 공유를 어디에 해야 하는지?

A3 이익 공유의 대상이 원산지국인지 제공국인지 여부는 나고야 의정서 해석과 관련하여 가장 참여한 대립이 존재하는 부분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음. 일반적인 견해에 따르면 이익 공유의 상대방은 원산지국인 미국이라 볼 수 있으나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생물다양성 협약에 따라 유전자원을 획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국이 유전자원의 제공국에 해당할 수 있고 이익 공유의 상대방이 누구인지와 관련하여서는 추후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MAT 체결에 앞서 구체적인 내용을 관련 전문가 혹은 각 부처에서 운영 중인 help desk로 문의할 것.

8. 주요기관

- 관련 규정**
- 나고야 의정서 제13조 국가연락기관 및 국가책임기관 (National Focal Points and Competent National Authorities)
 - 나고야 의정서 제17조 유전자원 이용 감시(Monitoring the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기본원칙

- 각 당사국은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국가연락기관(NFP : National Focal Point) 및 하나 이상의 국가책임기관(CNA : Competent National Authorities)을 지정해야 함
- 또한 유전자원 이용의 투명성을 감시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점검기관(Checkpoint)을 지정해야 함

주요 국가기관의 역할

- 국가연락기관(NFP) : 1개 또는 복수의 연락기관 지정
 - ① 유전자원 및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접근을 위해 사전통보승인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에 관한 정보
 - ② 이익 공유를 포함한 상호합의조건 확정 절차에 관한 정보
 - ③ 국가책임기관, 관련 토착지역공동체, 그리고 관련 이해관계자에 관한 정보
 - 캐나다(Environment Canada), 중국(Ministry of Environment Protection), 인디아(Ministry of Environment & Forests), 남아프리카(Department of Environmental Affairs) 등 160개국 212개 기관 지정 운영(2011.12.29. 현재)
 - 당사국의 국가연락기관 추가 현황정보는 www.cbd.int/doc/lists/nfp-abs.pdf
- 국가책임기관(CNA) : 1개 또는 복수의 국가책임기관 지정

- ① 제공국의 입법적, 행정적, 또는 정책적 조치에 따라 접근 허가 부여
- ② 접근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증서를 발급
- ③ 사전통보승인 취득 및 상호합의조건 체결에 관한 절차 및 요건에 대해 자문
 - 호주(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Water, Heritage and the Arts), 덴마크(Ministry of Environment and Energy), 이집트(Ministry of State for Environmental Affairs, Nature Conservation), 등 31개국 41개 기관 지정 운영 (2011.12.29 현재)
 - 당사국의 국가책임기관 현황정보는 www.cbd.int/doc/lists/nfp-abs-cna.pdf
 - ☞ NFP, CNA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관련 공공기관, 연구기관, 학술단체 등을 통해 해당 국가의 국내 절차 등에 대해 문의
 - ☞ 당사국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입법적, 행정적, 그리고 정책적 조치 등에 관한 정보는 ABS-CHM(Clearing House Mechanism)을 통해 제공됨
- 점검기관(Checkpoint) : 1개 또는 복수의 점검기관 지정
 - ① 사전통보승인, 유전자원의 출처, 상호합의조건의 체결, 그리고/또는 유전자원 이용과 관련한 정보의 취합 또는 접수
 - ② 의무준수 미 이행에 대해 대처를 위한 생물유전자원 이용자의 정보 수집
 - ③ 수집한 정보(국제적으로 인정된 의문준수 인증서 정보를 포함)의 관련 당국, 제공국 및 ABS 정보공유체제(CHM)에 제공, 단, 비밀정보의 보호에 대해서는 침해하지 않음
 - ④ 유전자원의 이용이나 연구, 개발, 혁신, 상용화 이전 또는 상용화등 모든 단계에 관한 정보

9. 의무준수(Compliance)

관련 규정

- 나고야 의정서 제15조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국내법 또는 규제요건의 준수(Compliance with domestic legislation or regulatory requirements on access and benefit-sharing)
- 나고야 의정서 제16조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국내법 또는 규제요건 준수(Compliance with domestic legislation or regulatory requirements on access and benefit-sharing for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 나고야 의정서 제18조 상호합의조건의 준수(Compliance with mutually agreed terms)
- 나고야 의정서 제30조 의정서의 준수를 촉진하기 위한 절차와 체제 (Procedures and mechanisms to promote compliance with this protocol)

기본원칙

- 각 당사국은 자국 내에서 이용되는 유전자원 또는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이 사전통보 승인 획득 및 상호합의조건 하에서 확정되었음을 규정하기 위해 자원제공국(자원 원산지국)의 접근 및 이익 공유 관련 국내법 또는 규제요건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쟁점 사항

- 개도국에서는 나고야 의정서의 이행여부에 대한 세세한 점검을 국가가 책임지고 이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한 반면, 선진국에서는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할 것을 주장
- 나고야 의정서 제30조(이 의정서의 준수를 촉진하기 위한 절차와 체제)는 당사국의 의무 준수를 다루는 규정이며, 제15조, 제16조,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국내입법 및 상호합의조건 이행과 관련된 의무준수 조항
- 의무준수 촉진을 위한 생물유전자원의 이용에 대해 점검수단 확보
 - 의무준수를 장려하기 위해 각 당사국은 유전자원 이용의 투명성을 감시하고 강화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의정서 제17조)
 - 1개 또는 복수의 유전자원 점검기관 지정

점검기관(Checkpoint)

점검기관의 지정 및 주요내용

- 1개 또는 복수의 점검기관 지정
 - 사전통보승인, 유전자원의 출처, 상호합의조건의 체결, 그리고/또는 유전자원 이용과 관련한 정보의 취합 또는 접수
 - 의무준수 미이행에 대해 대처를 위한 생물유전자원 이용자의 정보 수집
 - 수집한 정보(국제적으로 인정된 의문준수 인증서를 포함)의 관련 당국, 제공국 및 ABS 정보 공유체제(CHM)에 제공, 단, 비밀정보의 보호에 대해서는 침해하지 않음
 - 유전자원의 이용이나 연구, 개발, 혁신, 상용화 이전 또는 상용화의 모든 단계에 관한 정보의 수집
- 이용자와 제공자에게 보고의무 등을 통해 MAT 이행에 관한 정보고유 조항을 포함하도록 장려
- 경제적인 의사소통 수단 및 시스템의 이용을 장려

10. 접근 및 이익 공유 정보공유체계(ABS-Clearing House)

- 관련 규정**
- 나고야 의정서 제14조 접근 및 이익 공유 정보공유체제와 정보공유(The access and benefit-sharing clearing house and Information Sharing)
 - 나고야 의정서 제17조 유전자원 이용 감시(Monitoring the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기본원칙

- ABS-Clearing House는 특정 당사국의 ABS 관련 정보를 이해관계자(정부기관, 연구기관, 기업, 토착지역공동체 등)에 제공하여 공유하는 협력체제로 제공되는 정보는 기밀정보를 제외한 의정서가 요구하는 정보와 당사국총회가 내린 결정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를 제공
 -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입법적, 행정적, 정책적 조치
 - 국가연락기관과 국가책임기관에 관한 정보
 - 접근 시점에 사전통보승인 결정과 상호합의조건의 확정에 대한 증거로 발급하는 허가나 이에 상당하는 것
 - 토착지역공동체들의 관련 유관 기관과, 이에 관하여 결정된 정보
 - 모델계약조항
 - 유전자원 감시를 위해 강구된 방법과 수단
 - 행동규약 및 모범조약
 -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의무준수 인증서

국제적으로 인정된 의무준수 인증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 | | | |
|-----------------------|-------|---------------------------|---------------|
| • 발급 기관 | • 발급일 | • 제공자 | • 인증서 고유의 확인자 |
| • 사전통보승인을 구하는 자 혹은 기관 | | • 인증서가 인증하는 대상 물질 또는 유전자원 | |
| • 상호합의조건에 체결되었다는 확인 | | • 상호합의조건이 체결되었다는 확인 | |
| • 사전통보승인이 있었다는 확인 | | • 상업적 그리고/또는 비상업적 이용 | |



주요 정보공유체계와의 관계

- BCH(Biosafety Clearing-House)
 - LMO(유전자변형생물체: Living Modified Organism)의 수입승인, 관련 법률, 연락기관, 책임기관, 승인기관, 승인 여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
- CBD-CHM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Clearing House Mechanism):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을 위한 유용정보와 적절한 수단 등을 당사국 및 이해관계자 간에게 제공함으로써 상호간의 과학적, 기술적 협력관계 구축이고 이를 통해 2011-2020 생물다양성 이행전략(Strategic Plan for Biological 2011-2020) 및 생물다양성 협약의 이행을 촉진

11. 세계 다자간 이익 공유 체계 (Global Multilateral Benefit-Sharing Mechanism)

관련 규정 • 나고야 의정서 제10조 세계 다자간 이익 공유 체계(Global multilateral benefit-sharing mechanism)

| 기본원칙

- 월경성(초국경적) 상황, 혹은 사전통보승인을 부여 및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하는 유전자원 및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이용에 따른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을 공유하기 위하여 고안된 세계 다자간 이익 공유 체계

| 주요 내용

- 기금의 설립시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2012년 개최예정인 정부간 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
 - 실제적으로 현지 외 수집을 통한 자원사용, 알려지지 않은 국가 혹은 자국 관할권 밖의 지역에서 수집된 자원의 이용과 관련된 이익의 공유방식이 주요핵심
 - 또한, 이미 대중에게 널리 공개된 전통지식과 관련한 이익 공유도 포함될 수 있음
- 이 체제를 통해 확보한 기금은 생물다양성 보존 및 그 구성요소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지원하는 데 사용

| 관련 국제조약의 사례

-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에 관한 국제조약(FAO ITPGRFA : International Treaty on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이익 공유에 관한 다자간 시스템 개요

- 농업유전자원 이용·제공(작물 중 계재 : 35작물, 29속 사료)을 각국 공통 규정 하에 수행하는 다자간 시스템
- 표준물질이전계약(SMTA, '06.2 채택)에 따라 간소한 절차로 유전자원 취득 가능

- 의무로서는 이익 공유 수령자가 성과물을 상품화한 경우에는 수령자가 그 상품의 판매액(sales) 에서 30%를 차감한 금액의 1.1%를 신탁기금으로 지불
- 이익은 개발도상국, 경제 이행국에 따라 농민과 농업 우선 프로그램 목적으로 이용

관련된 이익 공유에 관한 다자간시스템 관련 조항

- 접근 및 이익 공유를 위한 다자시스템(제10조)
- 다자시스템의 범위(제11조)
- 다자시스템의 식량농업분야 식물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제12조)
- 다자시스템에서의 이익 공유(제13조)



V. 나고야 의정서 해외 대응사례

1. ABS 분쟁사례

인도의 기적의 나무로 불리는 '넝나무(Neem)' 분쟁

- 넝나무는 원산지(country of origin)인 인도에서 잎과 종자의 의학적인 가치로 인해 이미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으며 수많은 약효성분으로 인해 “기적의 나무” 또는 “마을 약국”으로 불리움
- 넝나무는 피부질환, 고열 그리고 질병감염을 치유 등 의학적 목적으로 이미 수천년 전부터 사용되어져 오고 있으며 또한 꽃은 아로마 향기와 함께 양질의 꿀을 생산하고, 목재는 가구, 연료 그리고 주택을 짓는데 사용되어졌으며 또한 추출물은 살충제와 같은 곤충방제에 이용되어지고도 함
- 넝(Neem)나무의 파생물로 부터 만들어진 제품은 상업적으로 중요하며, 이러한 이유로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나무로부터 유래된 것들을 특허화하려는 노력을 시도
- 1994년 미농무성(USDA)은 넝(Neem) 오일로부터 만들어진 살균제(fungicide)에 대한 특허를 승인
- 유럽특허사무소는 넝나무의 사용과 관련된 지식은 수집 년간 인디아와 그 밖의 지역에서 사용되어져 왔으며 따라서 본 특허는 진보성이 결여되었음을 확인하고 2000년 5월 이 특허를 철회/취소 하였음

식욕억제제인 남아공 부시맨의 전통 식물 '후디아(Hoodia)' 분쟁

- 아프리카 남부에 거주하는 부시맨족(산족)이 장기간 수렵에 나갈 때 배고픔을 잊게 해주는 식물인 후디아 고르도니(Hoodia gordonii)를 전통적으로 사용해 음
- 후디아를 복용하면 며칠간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평상시와 같이 수렵을 계속해도 신체의 상태를 양호하게 유지됨
- 남아공 국립연구기관인 과학·공업연구평의회(CSIR)가 1997년 후디아(Hoodia) 성분 중에 식욕억제효과를 가진 생리활성물질을 분리하는 데 성공하여 특허를 취득함

- 이를 영국 제약회사(Phytopharm)에게 특허사용권을 부여하였고, Phytopharm社は 먼저 Pfizer社와 이후에 Unilever에게 특허 실시권을 재부여 했으나 결국 양사는 모두 특허 실시권을 포기함

- 남아공의 변호사는 '사례 없이 전통지식을 가로채는 것은 생물해적행위(biopiracy)' 라고 주장하여 부시맨族에게 사례를 지불하도록 남아공 과학·공업연구평의회(CSIR)와 영국 제약회사(Phytopharm)에게 압력을 가함
- 현재 칼리할리 사막에서 합법적으로 후디아(Hoodia)를 수확하는 모든 기업은 부시맨族에게 사용료(벌채료)를 지불하고 있음
- 미국에서는 후디아(Hoodia) 건강식품이 범람하고 있으며, 거의 대부분 유사제품이라고 알려지고 있음

일본 화장품회사 시세이도(資生堂) 분쟁

- 일본 화장품회사 시세이도는 인도네시아에서 야생 허브를 이용한 화장품 원료 등에 관한 51건의 특허를 취득했으나, 현지 비정부민간단체 (NGO)가 ABS 기준에 저촉된다고 주장함
- 실제로는 위법한 이용이 없었지만, 시세이도는 기업이미지가 손상될 우려가 있어 2002년 특허를 철회함

안데스의 산삼이라 불리는 페루 '마카(Maca)' 분쟁

- 마카(Maca)는 페루가 원산지인 식물로서 안데스의 산삼 또는 천연 Viagra로 일컬어지고 있음
- 마카(Maca)는 페루 유채과에 속하는 뿌리식물로 적도지역 부근의 해발 4,000미터 이상의 고지대이고, 일사량이 강하고, 일교차가 큰 조건에서 자라는 식물임
- 마카(Maca)는 발기부전을 위한 민간요법으로서 수세기에 걸쳐 이용해 왔고, Viagra의 대유행으로 천연 Viagra로서 판매되어 경작면적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음
- 2001년 미국 특허청이 Pure World Botanicals社에게 마카(Maca) 추출물인 MacaPure에 대해 특허를 인정하였으나, 이에 대해 페루 농민들은 생물해적행위(biopiracy)라고 반대운동을 시작함
- 그 이후 페루에서는 전통적으로 계승해온 동·식물을 해외로 반출시켜 의약품 등을 개발할 경우에 페루정부와 토착·지역사회와 일정한 비율로 이익공유하도록 하는 법률이 제정됨

- 현재 일본의 회사와 페루 토착·지역사회의 농민과 계약을 체결하여 관련 제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향후 ABS 의정서가 발효된 후에는 페루정부의 국내법 정비에 따라 사전동의(PIC) 및 상호 합의한 계약(MAT) 등을 통해 이익을 환원해야 할 가능성도 존재함

▣ 조류 독감(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분쟁

- 세계에서 가장 조류독감 감염자가 많았던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2007년부터 백신제조에 필요한 인체에 감염된 조류 독감 바이러스를 포함하는 국외반출 금지법을 제정함
- 이를 통해 2007년 세계보건기구(WHO)에 바이러스 제공을 거부
- 이는 선진국 기업이 백신개발에 이익을 올리고, 선진국 국민들은 백신을 통해 조류독감으로부터 건강을 지킬 수 있지만, 백신 가격이 높아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접종할 가능성이 없는 등 자국에 혜택이 없다는 이유로 반출을 금지함
- 2010년 10월에 ABS의정서가 채택된 이후 인도네시아 당국에서는 ABS의정서에 따라 신약개발에 따른 저렴한 백신 공급 등의 이익공유가 될 수 있다면 세계보건기구(WHO)에게 인체 병원균 (Pathogene)을 제공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표명함

2. 기업 및 연구소 대응사례

▣ 말레이시아 반딧불이를 이용하여 광학기기를 개발 중인 Olympus 발광현미경

- 말레이시아 북부 펠라주 열대우림지역에 서식하는 반딧불이의 발광물질을 접근하여 발광현미경 개발 등에 활용 중
- ABS 위험(Risk) 대처방안
 - 연구는 자원제공국인 말레이시아에서 실시하고, 자국에 반입은 없음
 - 시약개발을 성공하기 이전에 공동연구를 시작한 시점부터 자원제공국과 연구자금 제공 등 금전적인 이익공유 실시
 - 말레이시아 현지에 기술 이전 실시
 - 자원제공국과 공동으로 특허신청 및 지적재산권을 공유
- ABS 위험(Risk) 대응체계
 - 자원제공국의 ABS 관련법령이 없어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기업이 다수이고,

ABS 관련 법령정비가 지연되어 ABS 계약협상에 진전이 없어 현지에서 장기간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중개업체 (N 社)를 활용

- 향후 Olympus는 특정세포와 유전자를 발광시켜 암의 전이를 관찰하거나 발생·재생 의료 용도로 사용되는 새로운 발광 현미경 응용시장을 개척할 예정

▣ 인도네시아 미생물을 이용하여 신약을 개발 중인 Mercian

- 인도네시아 과학기술응용청(BPPT)의 직할 연구소인 Biotech와 공동으로 미생물자원을 탐사하여 일본 제약회사에게 신약개발을 위한 미생물 자원을 공급 중임
- 인도네시아 전지역에 걸쳐 미생물 자원 채취계약을 체결하여 채집 미생물을 배양하지만, 국외 반출은 파생물의 일종인 추출물(엑기스 형태)만 반출 중
 - 추출물은 유전적 기능단위가 없어 증식할 수 없으므로 자원 제공국도 안심되고, 미생물 자체가 유출되지 않으므로 장래 신약을 개발하더라도 어느 자원을 활용했는지 확인이 쉬움
- 2004년부터 추출물 15,000개체를 일본 관련기업에 제공하여 현재까지 신약 개발은 없었지만 임상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도 있으므로 향후 제품화가 기대됨

▣ 의학분야에 해양유래의 화합물로부터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플로리다 대학연구소(출처 : News Week, 2010.12월호)

- 미국 플로리다 대학연구소는 1997년부터 하와이, 플로리다, 괌, 팔라우 등에서 생명을 위협할 수 있을 정도로 신경독소를 생성하는 해초(남조류)에 대해 연구를 수행해 옴
- 2009년 남조류에서 추출한 심플로카(Symploca)라는 성분을 결장암, 골수암, 유방암 세포조직에 임상실험을 한 결과, 수시간 이내에 암세포를 절멸시켰고, 이 물질을 라가졸 (Lagazole)이라 명명
 - 2009년 7월부터 미국 국립암연구소(NCIS)에서 120만불을 출연하여 4개년 연구를 실시중
- 현재는 쥐(mouse)를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완료하였고, 향후 10년 이내에 미국 식품 의약품안전청(FDA) 허가를 취득하여 암 치료에 활용할 예정으로 연구 중
- 현재 세계 도처에서 약 30여개의 해양생물에서 유래한 화합물을 발굴 및 시험 중으로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당뇨병, 우울증, 천식 등의 치료제 개발을 위해 연구 중

VI. 나고야 의정서 관련 국내외 법령 현황

1. 국외 입법

국제수준			
구 분	협약 또는 법령	관련 대상 범위	주요 내용
	Convention on Biodiversity(CBD, 1993)	생물다양성(유전자원, 종, 생태계 포함)	
	Bonn Guidelines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the Benefits Arising out of their Utilization (2002)	CBD 적용을 받는 모든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 지식 (인간유전자원 제외)	PIC, MAT, 이익공유, 이해관계자 참여, 분쟁 해결 등
	FAO 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ITPGRFA, 2001)	식물유전자원	식물유전자원의 ABS에 대한 다자체제, 이익공유
	FAO International Code of Conduct for Plant Germplasm Collecting and Transfer	식물 배형질	다자체제, 채집 및 이전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지적재산권의 적용문제, 특허출원 요건으로서의 출처공개 문제 등
	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UPOV)	식물의 신품종	지적재산권을 통한 식물의 신품종 보호

지역수준			
구 분	협약 또는 법령	관련 대상 범위	주요 내용
Andean Community (볼리비아, 콜롬비아, 페루,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Decision 391 (1996)	유전자원, 파생물 및 제품	PIC, MAT, 이익공유, 전통 지식 보호 등
African Union (52개 아프리카 국가들)	The African Model Law f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Local Communities, Farmers and Breeders and for the Regulation of Access to Biological Resources (1998)	작물의 전통종자, 생물 자원 및 전통지식	지역사회의 권리, 생물자원 및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 규제 및 이익공유 등
African Regional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ARIPO) (16개 아프리카 국가들)	Legal Instrument for the Protec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 Expressions (2006)	지역사회의 전통지식	Access, use of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s expressions

지역수준(계속)			
구 분	협약 또는 법령	관련 대상 범위	주요 내용
Central America	Central American Agreement (2008)		
* 히말라야 지역	(제안 단계)	중국,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인도, 부탄, 네팔, 방글라데시 등 포함하므로 향후 우리나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ASEAN (브루나이,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The ASEAN Framework Agreement on Access to Biological and Genetic Resources (draft)	전통지식, 유전자원 (인간유전자원포함), 생물다양성협약 발효 전 수집된 생물자원 포함	유전자원의 이용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주민에게 최대한 환원해야 함 역내 유전자원에 대한 특허권 설정 불허

국가수준			
구 분	협약 또는 법령	관련 대상 범위	주요 내용
Brazil	Provisional Measure 2,186-16 on access to the genetic patrimony (2001)	Genetic patrimony (genetic information in the form of molecules, extracts, etc.)	접근, 이익공유, 전통지식의 보호
Costa Rica	Law 7788, Biodiversity Law (1998)	생물다양성 구성요소	CBD 이행법률
Philippines	Executive Order 247 (1996)	생물자원 및 유전자원	유전자원의 접근
	Implementing Rules and Regulations on the Protecting of Biological and Genetic Resources (1996)	생물자원 및 유전자원	유전자원의 접근, PIC(상업적 및 연구 목적) 생물유전자원 정부간위원회
	Republic Act No. 8371: The Indigenous Peoples Rights Act of 1997	필리핀의 많은 섬에 흩어져 살고 있는 토착민들의 유전 자원에 대한 고유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	전통지식, 기술혁신 및 관습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배분
	Rules and Regulations Implementing Republic Act No. 8371 (1998)		상기 법의 구체적 이행
	Republic Act No. 9147 "Wildlife Resources Conservation and protection Act" (2004)	유전자원 탐사, 야생동물 식물 보호	과학적 또는 상업적 목적의 연구를 위한 유전자원 탐사에 대한 허가제 (permit system)를 명시함
	Implementing Rules and Regulations of Republic Act No. 9147 (2005)	유전자원 탐사 유전자원 접근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세부 절차를 규정

국가수준(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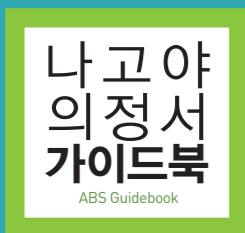
구 분	협약 또는 법령	관련 대상 범위	주요 내용
India	Biodiversity Act (2002)	생물다양성	CBD 이행법률
	Biological Diversity Rules (2004)		상기 법의 구체적 이행
	Patent Act (2005 개정)		원산지 비공개 또는 거짓 공개시, 특허출원 불허 및 특허 취소
Nepal	Law 2058 on Genetic Resources (2001)	유전자원 및 생물자원	유전자원 및 생물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Panama	Law 20 on the protection of indigenous knowledge (2001)	예술, 디자인 및 민간 전승에 대한 전통지식	전통지식의 보호
	Decree 257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2007)	유전자원	접근, 이익공유
Peru	Law 27811 on the protection of collective knowledge of indigenous peoples	전통지식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 보호 및 등록
Norway	Biodiversity Act (시행 전)		CBD 이행법률
Uganda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 Regulations (2005)	유전자원	유전자원의 MTA, 이익공유, 접근 등에 대한 제도적 기반 확립

지방수준

구 분	협약 또는 법령	관련 대상 범위	주요 내용
State of Sarawak, Malaysia	Laws of Sarawak, Chapter A106,		현지색이 강하고 민족의식이 강함
	Sarawak Biodiversity Centre (Amendment) Ordinance, 2003		
	The Sarawak Biodiversity Regulations, 2004		
State of Queensland, Australia	Act No. 19 of 2004, State of Queensland, Australia Biodiscovery Act 2004		

2. 국내 법령

생물자원종류 (소관부처)	관련 법률	관련조항
농업, 임업, 수산업 분야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근 : 분양승인 및 제한(제8조), 국외반출승인(제10조) 정보센터 : 정보화 및 인력육성(12조) - 농업유전자원 책임기관 및 관리기관 지정·운영(제16조, 제17조)
	중자산업법	접근 : 종자의 수출입(제14조)
산업분야 (지식경제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접근 : LMO의 수입 승인 등(제8조), 생산의 승인 등(제12조), 수출 통보(제20조) 접근 위반 : 승인취소(제17조), 허가취소 등(제23조) 정보센터(clearing house mechanism) : 바이오안전성센터 설치(제32조)
보건의료분야 (보건복지부)	천연물신약 연구 개발 촉진법	관련산업체에 대한 지원(제9조), 천연물 과학등의 지원(제11조) : PIC과 MAT에 대한 직접적인 관련조항 부재
야생생물분야 (환경부)	야생동식물보호법	접근 : 생태계교란 야생동·식물의 관리 등(제25조), 박제업자 등록 등(제40조), 생물자원의 국외반출(제41조) 점검 : 보고 및 검사 등(56조) 정보센터 : 생물자원보전시설간 정보교환 체계(제25조)
	자연환경보전법	접근 :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제15조) 보전대책 수립 및 국제협력 : 제35조
	습지보전법	접근 : 행위의 제한(제13조)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접근 : 생물자원의 접근신고 및 국외반출 승인 등(제10조~제12조) 정보센터 : 국가생물다양성센터 설치(제17조) 정보공유체계 구축(제19조) 국가책임기관 : 제6조 이익공유 : 유전자원에 대한 이익공유(제18조) 전통지식 : 전통지식 보존 등(제20조) 점검 : 보고 및 검사(제30조)
해양분야 (국토해양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접근 : 보호대상해양생물의 포획채취 금지(제20조), 해양생물의 수출·수입 등의 제한(제42조) 이익공유 및 국제협력 :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의 수립 및 국제협력(제38조)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안)	접근 : 해양생물자원 접근동의(제9조), 접근허가(제10조), 국외반출승인 및 신고제도 도입(제20조, 제21조, 제37조) 상호합의계약 : 분양승인제도 도입(제18조, 제19조, 제40조1항) 정보센터 : 해양생명자원 통합정보센터 구축·운영(제23조) - 책임기관 및 기탁등록기관 지정·운영(제15조 및 제17조) - 해외 해양생명자원사업의 촉진(제29조)
연구·개발분야 (교육과학기술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생명공학육성법	정보센터 : 정보센터 지정(제7조), 절차(제8조), 정보의 공개(제12조) - 기탁등록기관의 지정(제3조) 및 책임기관 지정(제6조) 접근 : 사후승인 통관절차(제19조) 생명공학육성정책 강구 등(제13조) : 생명공학관련 부처 업무 분장 정리



참고
나고야 의정서(국·영문)

생물다양성협약 부속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

이 의정서 당사국은,

이하 "협약"이라고 지칭되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으로서,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가 협약의 3대 핵심 목표 중 하나라는 점을 상기하고, 그리고 의정서가 협약의 범위 내에서 이 목표의 이행을 추구한다는 점을 인식하며,

자국의 자연자원에 대한, 그리고 협약의 규정에 따라 국가의 주권적 권리를 재확인하고,

아울러 협약 제15조를 상기하며,

협약 제16조와 제19조에 따라, 개발도상국 유전자원의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연구 및 혁신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기술 이전 및 협력이 지속 가능한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그리고 이러한 경제적 가치를 생물다양성의 관리자와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는 것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그 구성요소에 대한 지속가능한 이용의 핵심 유인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 빈곤 퇴치, 환경적 지속성에 기여함으로써 새천 년개발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접근 및 이익 공유의 잠재적 역할을 인정하고,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그러한 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 간의 연계성을 인정하고,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법적 확실성 제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아울러 유전자원 제공자와 이용자 간 상호합의조건 협상에 있어서 공평성 및 공정성 제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또한 접근 및 이익 공유에 있어 여성의 핵심적 역할을 인식하고,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The Parties to this Protocol,

Being Parties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vention",

Recalling that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is one of three core objectives of the Convention, and recognizing that this Protocol pursues the implementation of this objective within the Convention,

Reaffirming the sovereign rights of States over their natural resources and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Recalling further Article 15 of the Convention,

Recognizing the important contribution to sustainable development made by technology transfer and cooperation to build research and innovation capacities for adding value to genetic resources in developing countries, in accordance with Articles 16 and 19 of the Convention,

Recognizing that public awareness of the economic value of ecosystems and biodiversity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this economic value with the custodians of biodiversity are key incentives for the conservation of biological diversity and the sustainable use of its components,

Acknowledging the potential role of access and benefit-sharing to contribute to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biological diversity, poverty eradication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and thereby contributing to achieving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Acknowledging the linkage betwee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 utilization of such resources,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providing legal certainty with respect to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Further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promoting equity and fairness in negotiation of mutually agreed terms between providers and users of genetic resources,

Recognizing also the vital role that women play in access and benefit-sharing and affirming the need for the full participation of women at all levels of policy making and implementation for biodiversity conservation,

정책 수립 및 이행의 모든 단계에서 여성의 완전한 참여 필요성을 인식하며,
 협약의 접근 및 이익 공유 조항의 효과적 이행을 증대하기로 결정하며,
 월경성 상황, 또는 사전통보승인을 부여하거나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한 유전자원 및 이와
 연관된 전통지식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적인 해법이 요구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식량 안보, 공중 보건, 생물다양성 보전, 기후 변화 완화 및 이에 대한 적응에 있어서 유전
 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농업 생물다양성의 특별한 성격, 차별화된 특징, 그리고 특수한 해법이 요구되는 문제를
 인식하고,
 전 세계적 식량안보 달성과, 빈곤 완화 및 기후 변화와 관련하여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을 위한 유전자원의 특별한 성격 및 중요성과 더불어, 식량과 농업을 위한 유전자원에 대
 한 모든 국가의 상호의존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점에서 식량과 농업을 위한 식물유전자원
 에 관한 국제조약과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유전자원에 관한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위원회
 의 기본적 역할을 인식하며,
 세계보건기구의 국제보건규칙(2005)을 유념하며, 아울러 공중 보건 준비태세 및 대응 목
 적으로 인체 병원균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함을 유념하고,
 접근 및 이익 공유와 관련하여 다른 국제적 포럼에서 진행 중인 작업을 인정하고,
 협약과 조화롭게 마련된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유전자원에 관한 국제조약 하에 확립된
 접근 및 이익 공유의 다자 체제를 상기하며,
 접근 및 이익 공유와 관련한 국제적 약속문서들이 협약 목표의 달성을 위해 상호 보완적이
 어야 함을 인식하고,
 협약 제8조 차호는 유전자원 관련 전통 지식과 그러한 지식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와 관계된다는 그 관련성을 상기하고,
 유전자원과 전통지식 간 상호연관성, 토착지역공동체에게 있어 양자 간의 불가분적 속성,
 생물다양성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이들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생활을
 위한 전통 지식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Determined to further support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access and benefit-sharing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Recognizing that an innovative solution is required to address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derived from the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and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that occur in transboundary situations or for which it is not possible to grant or obtain prior informed consent,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genetic resources to food security, public health, biodiversity conservation, and the mitigation of and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Recognizing the special nature of agricultural biodiversity, its distinctive features and problems needing distinctive solutions,

Recognizing the interdependence of all countries with regard to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as well as their special nature and importance for achieving food security worldwide and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 agriculture in the context of poverty alleviation and climate change and acknowledging the fundamental role of the 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and the FAO Commission on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in this regard,

Mindful of the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2005)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and the importance of ensuring access to human pathogens for public health preparedness and response purposes,

Acknowledging ongoing work in other international forums relating to access and benefit-sharing,

Recalling the Multilateral System of Access and Benefit-sharing established under the 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developed in harmony with the Convention,

Recognizing that international instruments related to access and benefit-sharing should be mutually supportive with a view to achieving the objectives of the Convention,

Recalling the relevance of Article 8(j) of the Convention as it relates to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 utilization of such knowledge,

Noting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genetic resources and traditional knowledge, their inseparable nature for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the importance of the traditional knowledge for the conservation of biological diversity and the sustainable use of its components, and for the sustainable livelihoods of these communities,

유전자원 관련 전통 지식을 토착지역공동체가 보유 또는 소유하는 상황들의 다양성을 인식하고, 유전자원 관련 전통 지식의 정당한 보유자를 공동체 내에서 찾아내는 것은 토착지역공동체들의 권리를 유념하고,

아울러 유전자원 관련 전통 지식이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과 관련한 풍부한 문화적 전통을 반영하여 구전, 문서 기록, 또는 기타 형태로 각국에 보유되어 있는 독특한 상황들을 인식하고,

토착민 권리에 관한 국제연합선언을 주목하고,

이 의정서의 어떤 규정도 토착지역공동체의 권리를 축소하거나 소멸시키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면서,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목적

이 의정서의 목적은, 유전자원에 대한 적절한 접근, 유전자원과 기술에 대한 모든 권리를 고려한 관련 기술의 적절한 이전, 그리고 적절한 기금조성을 포함한 방법 등을 통하여,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생물다양성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는 것이다.

제 2 조 용어 사용

협약 제2조에 정의된 용어가 이 의정서에 적용된다. 이에 부가하여, 이 의정서의 목적상,

가. "당사국 총회"는 협약 당사국 총회를 의미한다.

나. "협약"은 생물다양성협약을 의미한다.

다. "유전자원 이용"은, 협약 제2조에 정의된 생명공학기술의 적용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유전자원의 유전적 그리고/또는 생화학적 구성성분에 관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Recognizing the diversity of circumstances in which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is held or owned by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Mindful that it is the right of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to identify the rightful holders of their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within their communities,

Further recognizing the unique circumstances where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is held in countries, which may be oral, documented or in other forms, reflecting a rich cultural heritage relevant for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biological diversity,

Noting the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and

Affirming that nothing in this Protocol shall be construed as diminishing or extinguishing the existing rights of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OBJECTIVE

The objective of this Protocol is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the benefits arising from the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including by appropriate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y appropriate transfer of relevant technologies, taking into account all rights over those resources and to technologies, and by appropriate funding, thereby contributing to the conservation of biological diversity and the sustainable use of its components.

ARTICLE 2 USE OF TERMS

The terms defined in Article 2 of the Convention shall apply to this Protocol. In addition, for the purposes of this Protocol:

(a) "Conference of the Parties" means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Convention;

(b) "Convention" means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means to conduct research and development on the genetic and/or biochemical composition of genetic resources, including through the application of biotechnology as defined in Article 2 of the Convention;

라. "생명공학기술"은, 협약 제2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특정 용도로 산출물 또는 공정을 개발하거나 변경하기 위해 생물학적 체계, 살아있는 유기체, 또는 그 파생물을 이용하는 모든 기술적 응용을 의미한다.

마. "파생물"은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지 않더라도 생물자원 또는 유전자원의 유전자 발현 또는 대사작용으로부터 자연적으로 생성된 생화학적 합성물을 의미한다.

제 3 조 범 위

이 의정서는 협약 제 15조의 적용범위 내의 유전자원과 그 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에 적용된다. 이 의정서는 또한 협약의 적용범위 내의 유전자원과 연관된 전통지식과 그 지식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에 적용된다.

제 4 조 국제 협약 및 문서와의 관계

1. 이 의정서의 조항들은 기존의 국제협약에서 유래하는 당사국의 권리 및 의무의 행사가 생물다양성에 심각한 피해 또는 위협을 초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항은 의정서와 다른 국제 문서들 간의 상하관계 창설을 의도하는 것이 아니다.
2. 이 의정서의 어떤 규정도 당사국이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기타 특별 협정을 포함하여 기타 관련 국제 협정을 개발·이행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 한다. 단, 위 협정들은 협약과 이 의정서의 목적에 배치되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지지하여야 한다.
3. 이 의정서는 이 의정서와 관련이 있는 다른 국제적 문서들과 상호 보완적인 방식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협약과 이 의정서의 목적을 지지하고 이와 배치되지 않는 한, 위 국제 문서들과 관련 국제기구들이 진행하는 유용하고 관련성 있는 작업이나 관행에 적절한 주의를 부여하여야 한다.
4. 이 의정서는 협약의 접근 및 이익 공유 조항의 이행을 위한 문서이다. 협약과 이 의정서의 목적과 부합하고 배치되지 않는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특별 국제 문서가 적용되는

(d) "Biotechnology" as defined in Article 2 of the Convention means any technological application that uses biological systems, living organisms, or derivatives thereof, to make or modify products or processes for specific use;

(e) "Derivative" means a naturally occurring biochemical compound resulting from the genetic expression or metabolism of biological or genetic resources, even if it does not contain functional units of heredity.

ARTICLE 3 SCOPE

This Protocol shall apply to genetic resources within the scope of Article 15 of the Convention and to the benefits arising from the utilization of such resources. This Protocol shall also apply to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within the scope of the Convention and to the benefits arising from the utilization of such knowledge.

ARTICLE 4 RELATIONSHIP WITH INTERNATIONAL AGREEMENTS AND INSTRUMENTS

1. The provisions of this Protocol shall not affect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any Party deriving from any existing international agreement, except where the exercise of those rights and obligations would cause a serious damage or threat to biological diversity. This paragraph is not intended to create a hierarchy between this Protocol and other international instruments.
2. Nothing in this Protocol shall prevent the Parties from developing and implementing other relevant international agreements, including other specialized access and benefit-sharing agreements, provided that they are supportive of and do not run counter to the objectives of the Convention and this Protocol.
3. This Protocol shall be implemented in a mutually supportive manner with other international instruments relevant to this Protocol. Due regard should be paid to useful and relevant ongoing work or practices under such international instruments and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provided that they are supportive of and do not run counter to the objectives of the Convention and this Protocol.
4. This Protocol is the instrumen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access and benefit-sharing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Where a specialized international access and benefit-sharing

경우, 이 의정서는 특별 문서에 의해 그리고 그 목적상 적용되는 특정 유전자원에 대해 해당 특별 문서의 당사국 또는 당사국들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5 조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 공유

1. 협약 제15조제3항 및 제7항에 의거하여, 유전자원 이용 및 후속하는 응용 및 상용화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은 그러한 자원의 원산지 국가로서 그러한 자원을 제공하는 당사국 또는 협약에 따라 유전자원을 획득한 당사국과 공정하고 공평한 방식으로 공유되어야 한다. 그러한 공유는 상호합의조건에 따른다.
2. 각 당사국은 유전자원에 대한 토착지역공동체의 확립된 권리에 관한 국내 입법에 따라 토착지역공동체가 보유하는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이 상호합의조건에 근거하여 해당 공동체와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되는 것을 보장할 목적으로 입법적, 행정적, 정책적 조치 중 적절한 조치를 채택하여야 한다.
3. 위 제1항을 이행하기 위해 각 당사국은 입법적, 행정적, 또는 정책적 조치 중 적절한 조치를 채택하여야 한다.
4. 이익은 금전적, 비금전적 이익을 포함하며, 부속서에 열거된 것들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5. 각 당사국은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이 그러한 지식을 보유하는 토착지역공동체들과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되도록 입법적, 행정적, 또는 정책적 조치 중 적절한 조치를 채택하여야 한다. 그러한 공유는 상호합의조건에 따른다.

제 6 조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1. 자연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 그리고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국내 입법 또는 규제 요건의 설치를 조건으로, 유전자원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유전자원 접근은,

instrument applies that is consistent with, and does not run counter to the objectives of the Convention and this Protocol, this Protocol does not apply for the Party or Parties to the specialized instrument in respect of the specific genetic resource covered by and for the purpose of the specialized instrument.

ARTICLE 5

FAIR AND EQUITABLE BENEFIT-SHARING

1. In accordance with Article 15, paragraphs 3 and 7 of the Convention, benefits arising from the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as well as subsequent applications and commercialization shall be shared in a fair and equitable way with the Party providing such resources that is the country of origin of such resources or a Party that has acquired the genetic resources in accordance with the Convention. Such sharing shall be upon mutually agreed terms.
2. Each Party shall take legislative, administrative or policy measures, as appropriate, with the aim of ensuring that benefits arising from the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that are held by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in accordance with domestic legislation regarding the established rights of these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over these genetic resources, are shared in a fair and equitable way with the communities concerned, based on mutually agreed terms.
3. To implement paragraph 1 above, each Party shall take legislative, administrative or policy measures, as appropriate.
4. Benefits may include monetary and non monetary benefit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ose listed in the Annex.
5. Each Party shall take legislative, administrative or policy measures as appropriate, in order that the benefits arising from the utiliza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are shared in a fair and equitable way with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holding such knowledge. Such sharing shall be upon mutually agreed terms.

ARTICLE 6

ACCESS TO GENETIC RESOURCES

1. In the exercise of sovereign rights over natural resources, and subject to domestic access and benefit-sharing legislation or regulatory requirements, access to genetic resources for their utilization shall be subject to the prior informed consent of the Party providing such resources

해당 당사국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그러한 자원의 원산지 국가로서 그러한 자원을 제공하는 당사국 또는 협약에 따라 유전자원을 획득한 당사국의 사전통보승인에 따라야 한다.

2. 각 당사국은, 국내법에 의거하여, 토착지역공동체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부여할 확립된 권리를 가진 경우, 그러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위한 토착지역공동체의 사전통보승인 또는 승인과 관여를 취득하는 것을 보장할 목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채택하여야 한다.

3. 상기 제1항에 따라, 사전통보승인을 요구하는 각 당사국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위해 필요한 입법적, 행정적, 또는 정책적 조치 중 적절한 조치를 채택하여야 한다:

가.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국내입법 및 규제 요건의 법적 확실성, 명확성, 그리고 투명성의 제공;

나. 유전자원 접근에 관한 공정하고 비자의적 규칙과 절차의 제공;

다. 사전통보승인 신청 방법에 관한 정보의 제공;

라.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합리적 기간 내에 국가책임기관의 명확하고 투명한 서면 결정의 제공;

마. 유전자원 접근 시 사전통보승인 부여 결정과 상호합의조건 체결의 증거로서 허가증이나 그 상응 문서의 발급과 이익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에 대한 통보의 제공;

바. 적용 가능한 경우, 그리고 국내입법을 조건으로, 유전자원 접근에 대한 토착지역공동체의 사전통보승인 취득 또는 승인과 참여를 위한 기준 그리고/또는 절차에 관한 규정; 그리고

사. 상호합의조건의 요구 및 체결에 대한 명확한 규칙 및 절차의 설치. 상호합의조건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특히 다음 각 목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 (1) 분쟁 해결 조항;
- (2) 지적재산권 관련 사항을 포함한 이익 공유 조건;
- (3)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제3자의 추후 이용에 관한 조건; 그리고
- (4) 적용 가능한 경우, 사용 목적의 변경에 관한 조건.

제 7 조

유전자원 관련 전통 지식에 대한 접근

국내법에 따라, 각 당사국은 토착지역공동체가 보유하는 유전자원 관련 전통 지식에 대한 접근이 해당 토착지역공동체의 사전통보승인 또는 승인과 참여에 따라 접근되고, 상호합

that is the country of origin of such resources or a Party that has acquired the genetic resources in accordance with the Convention, unless otherwise determined by that Party.

2. In accordance with domestic law, each Party shall take measures, as appropriate, with the aim of ensuring that the prior informed consent or approval and involvement of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is obtained for access to genetic resources where they have the established right to grant access to such resources.

3. Pursuant to paragraph 1 above, each Party requiring prior informed consent shall take the necessary legislative, administrative or policy measures, as appropriate, to:

- (a) Provide for legal certainty, clarity and transparency of their domestic access and benefit sharing legislation or regulatory requirements;
- (b) Provide for fair and non-arbitrary rules and procedures on accessing genetic resources;
- (c) Provide information on how to apply for prior informed consent;
- (d) Provide for a clear and transparent written decision by a competent national authority, in a cost-effective manner and with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 (e) Provide for the issuance at the time of access of a permit or its equivalent as evidence of the decision to grant prior informed consent and of the establishment of mutually agreed terms, and notify the Access and Benefit-sharing Clearing-House accordingly;
- (f) Where applicable, and subject to domestic legislation, set out criteria and/or processes for obtaining prior informed consent or approval and involvement of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for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 (g) Establish clear rules and procedures for requiring and establishing mutually agreed terms. Such terms shall be set out in writing and may include, inter alia:
 - (i) A dispute settlement clause;
 - (ii) Terms on benefit-sharing, including in relation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iii) Terms on subsequent third-party use, if any; and
 - (iv) Terms on changes of intent, where applicable.

ARTICLE 7

ACCESS TO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In accordance with domestic law, each Party shall take measures, as appropriate, with the aim of ensuring that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that is held by indigenous

의조건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보장할 목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채택하여야 한다.

제 8 조 특별 고려사항

각 당사국은, 접근 및 이익 공유 관련 법률 또는 규제 요건을 제정·이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이행해야 한다.

가. 연구 의도의 변경에 대한 대처 필요성을 고려하여, 비(非)상업적 연구를 위한 접근에 대한 간소화된 조치를 포함하여, 특히 개발도상국에서의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에 기여하는 연구를 촉진하고 장려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한다.

나. 국내적으로 또는 국제적으로 판단할 때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건강을 위협하거나 침해하는 현존하는 또는 임박한 비상사태에 적절한 주의를 부여한다. 당사국은 유전자원에 대한 신속한 접근의 필요성과, 그리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이(특히 개도국에서) 감당 가능한 치료제에 접근하는 것을 포함하여, 그러한 유전자원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면서 신속하게 공유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다.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유전자원의 중요성과 식량 안보에 있어서의 특별한 역할을 고려한다.

제 9 조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에 대한 기여

각 당사국은 이용자와 제공자가 유전자원 이용 이익을 생물다양성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사용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제 10 조 세계 다자 간 이익 공유 체제

각 당사국은 월경성 상황에서 발생하는 또는 사전통보승인의 부여 또는 취득이 불가능한 유전자원 및 유전자원 관련 전통 지식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

and local communities is accessed with the prior and informed consent or approval and involvement of these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and that mutually agreed terms have been established.

ARTICLE 8 SPECIAL CONSIDERATIONS

In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its access and benefit-sharing legislation or regulatory requirements, each Party shall:

(a) Create conditions to promote and encourage research which contributes to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biological diversity, particularly in developing countries, including through simplified measures on access for non-commercial research purposes, taking into account the need to address a change of intent for such research;

(b) Pay due regard to cases of present or imminent emergencies that threaten or damage human, animal or plant health, as determined nationally or internationally. Parties may take into consideration the need for expeditious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expeditious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out of the use of such genetic resources, including access to affordable treatments by those in need, especially in developing countries;

(c) Consider the importance of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and their special role for food security.

ARTICLE 9 CONTRIBUTION TO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The Parties shall encourage users and providers to direct benefits arising from the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towards the conservation of biological diversity and the sustainable use of its components.

ARTICLE 10 GLOBAL MULTILATERAL BENEFIT-SHARING MECHANISM

Parties shall consider the need for and modalities of a global multilateral benefit-sharing mechanism to address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derived from the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and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that occur in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계 다자 간 이익 공유 체제의 필요성과 양식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체제를 통해 유전자원 및 유전자원 관련 전통 지식 이용자가 공유하는 이익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그 구성요소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세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제 11 조 일경성 협력

1. 동일한 유전자원이 두 당사국 이상의 영토 현지 내에서 발견되는 경우 해당 당사국은, 이 의정서를 이행할 목적으로, 해당 되는 경우, 관련 토착지역공동체를 참여시키고, 적절한 바에 따라 협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유전자원과 연관된 동일 전통 지식을 복수의 당사국에 걸쳐 있는 하나 이상의 토착지역공동체가 공유하는 경우, 해당 당사국들은 해당 토착지역공동체들을 참여시키고 이 의정서의 목적 이행을 위해 적절한 바에 따라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 12 조 유전자원 관련 전통 지식

1. 당사국들은 이 의정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국내법에 따라, 유전자원 관련 전통 지식에 관한 토착지역공동체들의 해당되는 관습법, 공동체 규약 및, 절차를 고려해야 한다.
2. 당사국들은 해당 토착지역공동체들이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유전자원 관련 전통 지식의 잠재적 이용자에게, 그러한 지식의 접근 및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위한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를 통해 열람 가능한 사항들을 포함하여, 이용자의 의무를 통지할 체제를 마련하여야 한다.
3. 당사국들은 공동체 내 여성의 참여를 포함하여 토착지역공동체가 다음 각 호를 개발하는데 적절한 경우 지원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가. 유전자원 관련 전통 지식에 대한 접근 및 그러한 지식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공동체 규약;

transboundary situations or for which it is not possible to grant or obtain prior informed consent. The benefits shared by users of genetic resources and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through this mechanism shall be used to support the conservation of biological diversity and the sustainable use of its components globally.

ARTICLE 11 TRANSBOUNDARY COOPERATION

1. In instances where the same genetic resources are found in situ within the territory of more than one Party, those Parties shall endeavour to cooperate, as appropriate, with the involvement of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concerned, where applicable, with a view to implementing this Protocol.
2. Where the same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is shared by one or more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in several Parties, those Parties shall endeavour to cooperate, as appropriate, with the involvement of the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concerned, with a view to implementing the objective of this Protocol.

ARTICLE 12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1. In implementing their obligations under this Protocol, Parties shall in accordance with domestic law take into consideration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customary laws, community protocols and procedures, as applicable, with respect to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2. Parties, with the effective participation of the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concerned, shall establish mechanisms to inform potential users of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about their obligations, including measures as made available through the Access and Benefit-sharing Clearing-House for access to and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 utilization of such knowledge.
3. Parties shall endeavour to support, as appropriate, the development by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including women within these communities, of:
 - (a) Community protocols in relation to access to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out of the utilization of

나. 유전자원 관련 전통 지식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확보하기 위한 상호합의조건의 최소 요건; 그리고

다. 유전자원 관련 전통 지식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공유에 관한 표준계약조항

4. 당사국들은 이 의정서를 이행함에 있어 협약의 목적에 따른 토착지역공동체 내, 또는 공동체 간 유전자원 및 유전자원 관련 전통 지식의 관습적 이용 및 교류를 가능한 한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

제 13 조

국가연락기관 및 국가책임기관

1. 각 당사국은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국가연락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국가연락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신청자의 경우, 사전통보승인 취득과 상호합의조건(이익 공유를 포함) 체결을 위한 절차에 관한 정보

나. 가능할 경우, 유전자원 관련 전통 지식에 대한 접근 신청자의 경우, 토착지역공동체의 사전통보승인 취득 또는, 적절한 경우, 토착지역공동체의 승인과 참여에 관한 절차, 그리고 이익 공유를 포함하여 상호합의조건 체결에 관한 정보, 그리고

다. 국가책임기관, 관련 토착지역공동체, 그리고 관련 이해관계자에 관한 정보

국가연락기관은 사무국과의 연락의 책임이 있다.

2. 각 당사국은 접근 및 이익 공유에 대한 하나 이상의 국가책임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국가책임기관은 해당 입법적, 행정적 또는 정책적 조치에 따라 접근 허가를 부여하거나, 적절한 경우 접근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증서를 발급할 책임이 있고, 사전통보승인 취득 및 상호합의조건 체결에 관한 해당 절차 및 요건에 대해 자문할 책임을 부담한다.

3. 당사국은 국가연락기관 및 국가책임기관 직무를 수행할 단일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4. 각 당사국은 늦어도 이 의정서의 발효일 까지 국가연락기관 및 국가책임기관의 연락처

such knowledge;

(b) Minimum requirements for mutually agreed terms to secure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 utiliza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and

(c) Model contractual clauses for benefit-sharing arising from the utiliza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4. Parties, in their implementation of this Protocol, shall, as far as possible, not restrict the customary use and exchange of genetic resources and associated traditional knowledge within and amongst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in accordance with the objectives of the Convention.

ARTICLE 13

NATIONAL FOCAL POINTS AND COMPETENT NATIONAL AUTHORITIES

1. Each Party shall designate a national focal point on access and benefit-sharing. The national focal point shall make information available as follows:

(a) For applicants seeking access to genetic resources, information on procedures for obtaining prior informed consent and establishing mutually agreed terms, including benefit-sharing;

(b) For applicants seeking access to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where possible, information on procedures for obtaining prior informed consent or approval and involvement, as appropriate, of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and establishing mutually agreed terms including benefit-sharing; and

(c) Information on competent national authorities, relevant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and relevant stakeholders.

The national focal point shall be responsible for liaison with the Secretariat.

2. Each Party shall designate one or more competent national authorities on access and benefit sharing. Competent national authorities shall,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national legislative, administrative or policy measures, be responsible for granting access or, as applicable, issuing written evidence that access requirements have been met and be responsible for advising on applicable procedures and requirements for obtaining prior informed consent and entering into mutually agreed terms.

를 사무국에 통보해야 한다. 당사국이 두 개 이상의 국가책임기관을 지정할 경우 해당 기관들이 각각 부담하는 책임에 대한 관련 정보를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해당 되는 경우, 그러한 정보에는 최소한 접근 신청 유전자원에 대한 책임기관을 명시하여야 한다. 각 당사국은 국가연락기관 지정이나 연락처 또는 국가책임기관(들)의 책임에 변경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즉시 사무국에 통보해야 한다.

5. 사무국은 제4항에 따라 접수된 정보를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 14 조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와 정보 공유

1.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가 이 문서에 의거하여 협약 제18조제3항에 따른 정보공유체계의 일환으로 설치된다. 이 체계는 접근 및 이익 공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이 체계는 이 의정서의 이행과 관련하여 각 당사국이 공개하는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공한다.

2. 각 당사국은, 기밀 정보 보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이 의정서가 요구하는 정보는 물론, 이 의정서 당사국 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국총회가 내린 결정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를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에 공개해야 한다. 그러한 정보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해야 한다.

가.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입법적, 행정적, 그리고 정책적 조치

나. 국가연락기관 및 국가책임기관에 관한 정보

다. 유전자원 접근 시 사전통보승인 부여 결정과 상호합의조건 체결 증거로 발급하는 허가증 또는 상응 문서

3. 가능하고 적절할 경우, 추가 정보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할 수 있다:.

가. 토착지역공동체들의 관련 책임기관과, 이에 관하여 결정된 정보

3. A Party may designate a single entity to fulfil the functions of both focal point and competent national authority.

4. Each Party shall, no later than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Protocol for it, notify the Secretariat of the contact information of its national focal point and its competent national authority or authorities. Where a Party designates more than one competent national authority, it shall convey to the Secretariat, with its notification thereof, relevant information on the respective responsibilities of those authorities. Where applicable, such information shall, at a minimum, specify which competent authority is responsible for the genetic resources sought. Each Party shall forthwith notify the Secretariat of any changes in the designation of its national focal point or in the contact information or responsibilities of its competent national authority or authorities.

5. The Secretariat shall make information received pursuant to paragraph 4 above available through the Access and Benefit-sharing Clearing-House.

ARTICLE 14

THE ACCESS AND BENEFIT-SHARING CLEARING-HOUSE AND INFORMATION SHARING

1. An Access and Benefit-sharing Clearing-House is hereby established as part of the clearing house mechanism under Article 18, paragraph 3, of the Convention. It shall serve as a means for sharing of information related to access and benefit-sharing. In particular, it shall provide access to information made available by each Party relevant to the implementation of this Protocol.

2. Without prejudice to the protection of confidential information, each Party shall make available to the Access and Benefit-sharing Clearing-House any information required by this Protocol, as well as information required pursuant to the decisions taken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is Protocol. The information shall include:

(a) Legislative, administrative and policy measures on access and benefit-sharing;

(b) Information on the national focal point and competent national authority or authorities; and

(c) Permits or their equivalent issued at the time of access as evidence of the decision to grant prior informed consent and of the establishment of mutually agreed terms.

3. Additional information, if available and as appropriate, may include:

(a) Relevant competent authorities of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and information as so decided;

나. 표준계약조항

다. 유전자원 감시를 위해 개발된 방법 및 수단, 그리고

라. 행동규범 및 모범관행

4.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의 활동 보고서를 포함한 운영 방식은 이 의정서 당사국 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국총회의 제1차 회의에서 심의하고 결정하며, 계속하여 검토된다.

제 15 조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국내입법 또는 규제 요건의 준수

1. 각 당사국은 그 관할 내에서 이용되는 유전자원이 타방 당사국의 접근 및 이익 공유 관련 국내법 또는 규제 요건이 요구하는 사전통보승인에 따라 접근되고, 상호합의조건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규정할 적절하고 효과적이며 비례적인 입법적, 행정적, 또는 정책적 조치를 채택하여야 한다.
2. 각 당사국은 제1항에 따라 채택된 조치의 위반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적절하고 효과적이며 비례적인 조치를 채택한다.
3. 당사국들은 제1항에 언급된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국내입법 또는 규제 요건의 위반 사례에 대해, 가능한 한 그리고 적절한 바에 따라, 협력한다.

제 16 조

유전자원 관련 전통 지식에 대한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국내입법 또는 규제 요건 준수

1. 각 당사국은 토착지역공동체가 소재한 타방 당사국의 접근 및 이익 공유 국내입법 또는 규제 요건이 요구하는 대로, 자국의 관할 내에서 이용되는 유전자원 관련 전통 지식이 해당 토착지역공동체의 사전통보승인 또는 승인과 참여 하에 접근되었고, 그리고 상호합의 조건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규정할 적절하고 효과적이며 비례적인 입법적, 행정적, 또는 정책적 조치 중 적절한 조치를 채택한다.

(b) Model contractual clauses;

(c) Methods and tools developed to monitor genetic resources; and

(d) Codes of conduct and best practices.

4. The modalities of the operation of the Access and Benefit-sharing Clearing-House, including reports on its activities, shall be considered and decided upon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is Protocol at its first meeting, and kept under review thereafter.

ARTICLE 15

COMPLIANCE WITH DOMESTIC LEGISLATION OR REGULATORY REQUIREMENTS ON ACCESS AND BENEFIT-SHARING

1. Each Party shall take appropriate, effective and proportionate legislative, administrative or policy measures to provide that genetic resources utilized within its jurisdiction have been accessed in accordance with prior informed consent and that mutually agreed terms have been established, as required by the domestic access and benefit-sharing legislation or regulatory requirements of the other Party.
2. Parties shall take appropriate, effective and proportionate measures to address situations of non compliance with measures adop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above.
3. Parties shall, as far as possible and as appropriate, cooperate in cases of alleged violation of domestic access and benefit-sharing legislation or regulatory requirements referred to in paragraph 1 above.

ARTICLE 16

COMPLIANCE WITH DOMESTIC LEGISLATION OR REGULATORY REQUIREMENTS ON ACCESS AND BENEFIT-SHARING FOR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1. Each Party shall take appropriate, effective and proportionate legislative, administrative or policy measures, as appropriate, to provide that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utilized within their jurisdiction has been accessed in accordance with prior informed consent or approval and involvement of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and that mutually agreed terms have been established, as required by domestic access and benefit sharing

2. 각 당사국은 제1항에 따라 채택된 조치의 위반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적절하고 효과적이며 비례적인 조치를 채택한다.

3. 당사국들은 제1항에 언급된 접근 및 이익 공유 국내입법 또는 규제 요건에 대한 위반주장에 대해 가능한 한 그리고 적절한 바에 따라 협력한다.

제 17 조 유전자원 이용 감시

1. 의무준수를 장려하기 위해 각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유전자원 이용의 투명성을 감시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한 조치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가. 다음 각 목에 따라 하나 이상의 점검기관을 지정한다.

(1) 지정된 점검기관은 적절한 경우 사전통보승인, 유전자원의 출처, 상호합의조건의 체결, 그리고/또는 유전자원 이용과 관련한 정보를 취합하거나 접수한다.

(2) 각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그리고 특정 지정 점검기관의 특징에 따라 유전자원의 이용자가 지정 점검기관에 위목에 명시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각 당사국은 미 준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적절하고 효과적이며 비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기밀 정보 보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의무준수 인증서가 있는 경우 이러한 인증서로부터의 정보를 포함하여 그러한 정보를 적절한 관련 국가 기관들, 사전통보승인을 하는 당사국, 그리고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에 제공해야 한다.

(4) 점검기관은 효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가호의 이행과 관련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직무는 유전자원 이용이나, 연구, 개발, 혁신, 상용화 이전 또는 상용화 등 모든 진행 단계에 관한 정보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

나. 유전자원의 이용자 및 제공자로 하여금 상호합의조건에 보고 요건을 포함하여 그러한 조건의 이행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조항들을 포함시키도록 장려한다. 그리고 다. 비용 대비 효과가 높은 의사소통 수단 및 체계를 활용할 것을 장려한다.

2. 제6조제3항마호에 따라 발급되고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에 공개된 허가 또는

legislation or regulatory requirements of the other Party where such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are located.

2. Each Party shall take appropriate, effective and proportionate measures to address situations of non-compliance with measures adop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above.

3. Parties shall, as far as possible and as appropriate, cooperate in cases of alleged violation of domestic access and benefit-sharing legislation or regulatory requirements referred to in paragraph 1 above.

ARTICLE 17 MONITORING THE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1. To support compliance, each Party shall take measures, as appropriate, to monitor and to enhance transparency about the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Such measures shall include:

(a) The designation of one or more checkpoints, as follows:

(i) Designated checkpoints would collect or receive, as appropriate, relevant information related to prior informed consent, to the source of the genetic resource, to the establishment of mutually agreed terms, and/or to the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as appropriate;

(ii) Each Party shall, as appropriate and depending on the particular characteristics of a designated checkpoint, require users of genetic resources to provide the information specified in the above paragraph at a designated checkpoint. Each Party shall take appropriate, effective and proportionate measures to address situations of non-compliance;

(iii) Such information, including from internationally recognized certificates of compliance where they are available, will, without prejudice to the protection of confidential information, be provided to relevant national authorities, to the Party providing prior informed consent and to the Access and Benefit-sharing Clearing-House, as appropriate;

(iv) Check points must be effective and should have functions relevant to implementation of this subparagraph (a). They should be relevant to the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or to the collection of relevant information at, inter alia, any stage of research, development, innovation, pre-commercialization or commercialization.

(b) Encouraging users and providers of genetic resources to include provisions in mutually agreed terms to share information on the implementation of such terms, including through reporting requirements; and

그에 상당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의무준수 인증서를 구성한다.

3. 국제적으로 인정된 의무준수 인증서는 사전통보승인을 제공하는 당사국의 접근 및 이익 공유 국내법 및 규제 요건이 요구하는 대로, 해당 인증서에 적시된 유전자원이 사전통보승인에 따라 접근이 허용되었고 상호합의조건이 확정되었다는 증거 역할을 한다.

4. 국제적으로 인정된 의무준수 인증서는 해당 정보가 기밀 정보가 아닐 경우 최소한 다음 각 호와 같은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가. 발급 기관

나. 발급일

다. 제공자

라. 인증서 고유 확인

마. 사전통보승인이 부여된 자나 기관

바. 인증서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안이나 유전자원

사. 상호합의조건이 체결되었다는 확인

아. 사전통보승인이 있었다는 확인, 그리고

자. 상업적 그리고/또는 비상업적 이용

제 18 조

상호합의조건의 준수

1. 제6조제3항사호제(1)목과 제7조를 이행함에 있어, 적절한 경우, 각 당사국은 유전자원 그리고/또는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제공자 및 이용자가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분쟁 해결 관련 조항을 상호합의조건에 포함시키도록 권장해야 한다.

가. 모든 분쟁 해결 절차의 귀속 관할

나. 적용 가능한 법률, 그리고/또는

다. 조정 또는 중재와 같은 대안적 분쟁 해결책.

(c) Encouraging the use of cost-effective communication tools and systems.

2. A permit or its equivalent issu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6, paragraph 3 (e) and made available to the Access and Benefit-sharing Clearing-House, shall constitute an internationally recognized certificate of compliance.

3. An internationally recognized certificate of compliance shall serve as evidence that the genetic resource which it covers has been accessed in accordance with prior informed consent and that mutually agreed terms have been established, as required by the domestic access and benefit-sharing legislation or regulatory requirements of the Party providing prior informed consent.

4. The internationally recognized certificate of compliance shall contain the following minimum information when it is not confidential:

(a) Issuing authority;

(b) Date of issuance;

(c) The provider;

(d) Unique identifier of the certificate;

(e) The person or entity to whom prior informed consent was granted;

(f) Subject-matter or genetic resources covered by the certificate;

(g) Confirmation that mutually agreed terms were established;

(h) Confirmation that prior informed consent was obtained; and

(i) Commercial and/or non-commercial use.

ARTICLE 18

COMPLIANCE WITH MUTUALLY AGREED TERMS

1. In the implementation of Article 6, paragraph 3 (g) (i) and Article 7, each Party shall encourage providers and users of genetic resources and/or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to include provisions in mutually agreed terms to cover, where appropriate, dispute resolution including:

(a) The jurisdiction to which they will subject any dispute resolution processes;

(b) The applicable law; and/or

(c) Options fo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uch as mediation or arbitration.

2.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an opportunity to seek recourse is available under their legal

2. 각 당사국은 상호합의조건에서 비롯된 분쟁이 일어날 경우 적용 가능한 관할 요건에 따라 당사국의 법률 체계 하에서 분쟁해결을 추구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3. 각 당사국은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적절한 경우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가. 사법제도에 대한 접근, 그리고
 - 나. 외국 판결 및 중재 판정 상호 인정과 집행 관련 체계의 이용.
4. 이 조의 효력은 이 의정서 당사국 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국총회가 이 의정서 제31조에 따라 검토해야 한다.

제 19 조 표준계약조항

1. 각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상호합의조건을 위한 부문별 및 부문 간 표준계약조항의 구성, 갱신 및 이용을 권장해야 한다.
2. 이 의정서의 당사국 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국총회는 주기적으로 부문별 및 부문 간 표준계약조항의 사용현황을 파악해야 한다.

제 20 조 행동규약, 지침 및 모범관행 그리고/또는 기준

1. 각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접근 및 이익공유와 관련한 자발적인 행동규약, 지침 및 모범관행 그리고/또는 기준의 개발, 갱신 및 이용을 권장해야 한다.
2. 이 의정서의 당사국 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국총회는 자발적 행동규약, 지침 및 모범관행 그리고/또는 기준의 이용 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특정 행동규약, 지침 및 모범관행 그리고/또는 기준의 채택을 고려해야 한다.

systems, consistent with applicable jurisdictional requirements, in cases of disputes arising from mutually agreed terms.

3. Each Party shall take effective measures, as appropriate, regarding:

- (a) Access to justice; and
- (b) The utilization of mechanisms regarding mutual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and arbitral awards.

4. The effectiveness of this article shall be reviewed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is Protocol in accordance with Article 31 of this Protocol.

ARTICLE 19 MODEL CONTRACTUAL CLAUSES

1. Each Party shall encourage, as appropriate, the development, update and use of sectoral and cross-sectoral model contractual clauses for mutually agreed terms.
2.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is Protocol shall periodically take stock of the use of sectoral and cross-sectoral model contractual clauses.

ARTICLE 20 CODES OF CONDUCT, GUIDELINES AND BEST PRACTICES AND/OR STANDARDS

1. Each Party shall encourage, as appropriate, the development, update and use of voluntary codes of conduct, guidelines and best practices and/or standards in relation to access and benefit-sharing.
2.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is Protocol shall periodically take stock of the use of voluntary codes of conduct, guidelines and best practices and/or standards and consider the adoption of specific codes of conduct, guidelines and best practices and/or standards.

제 21 조 대중인식 제고

각 당사국은 유전자원과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중요성과, 이와 관련한 접근 및 이익공유 관련 사안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한 조치에는 예를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될 수 있다.

- 가. 의정서의 목적을 포함하여 이 의정서에 대한 홍보
- 나. 토착지역공동체 및 관련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회의 조직
- 다. 토착지역공동체 및 관련 이해관계자를 위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 라. 국가 정보공유체계를 통한 정보 제공
- 마. 토착지역공동체와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하는 자발적 행동규약, 지침 및 모범관행 그리고/또는 기준 홍보
- 바. 적절한 경우, 국가 내, 지역 내, 그리고 국제적 경험의 공유 촉진
- 사. 유전자원과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이용자 및 제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접근 및 이익공유 의무에 관한 교육 및 훈련
- 아. 토착지역공동체 및 관련 이해관계자의 이 의정서 이행 참여, 그리고
- 자. 토착지역공동체의 공동체 규약 및 절차에 대한 인식 개선

제 22 조 역량

1. 각 당사국은 특히 최빈개도국과 군소도서최빈개도국, 그리고 경제 전환기에 있는 당사국을 포함하여 개발도상국인 당사국에서 이 의정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기존의 세계적, 지역적, 소(小) 지역적, 국가적 기관 및 기구를 통한 수단을 포함하여 역량 강화, 역량 개발, 인적 자원 및 제도적 역량 강화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각 당사국은 비정부기구 및 민간 부문을 포함하여 토착지역공동체와 관련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

ARTICLE 21 AWARENESS-RAISING

Each Party shall take measures to raise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genetic resources and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and related access and benefit sharing issues. Such measures may include, inter alia:

- (a) Promotion of this Protocol, including its objective;
- (b) Organization of meetings of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and relevant stakeholders;
- (c) Establishment and maintenance of a help desk for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and relevant stakeholders;
- (d) Information dissemination through a national clearing-house;
- (e) Promotion of voluntary codes of conduct, guidelines and best practices and/or standards in consultation with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and relevant stakeholders;
- (f) Promotion of, as appropriate, domestic, regional and international exchanges of experience;
- (g) Education and training of users and providers of genetic resources and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about their access and benefit-sharing obligations;
- (h) Involvement of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and relevant stakeholders in the implementation of this Protocol; and
- (i) Awareness-raising of community protocols and procedures of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ARTICLE 22 CAPACITY

1. The Parties shall cooperate in the capacity-building, capacity development and strengthening of human resources and institutional capacities to effectively implement this Protocol in developing country Parties, in particular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and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among them, and Parties with economies in transition, including through existing global, regional, subregional and national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In this context, Parties should facilitate the involvement of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and relevant stakeholders, including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the private sector.

2. The need of developing country Parties, in particular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and small

2. 특히 최빈개도국과 군소도서최빈개도국, 그리고 경제 전환기에 있는 당사국을 포함하여 개발도상국인 당사국의, 협약 관련 조항에 따른 재정 자원에 대한 필요성을 이 의정서 이행을 위한 역량 강화 및 개발을 위해 적극 고려한다.

3. 이 의정서 이행과 관련한 적절한 조치의 토대로서 특히 최빈개도국과 군소도서 최빈개도국, 그리고 경제 전환기에 있는 당사국을 포함하여 개발도상국인 당사국은 국가 역량 자체 평가를 통해 자국의 국가 역량 관련 요구와 우선순위를 파악하여야 한다. 그렇게 함에 있어서 그러한 당사국들은 여성의 역량 관련 필요사항과 우선순위에 중점을 두고 토착지역 공동체들 및 관련 이해관계자가 자체 파악한 역량 관련 필요사항 및 우선순위를 지원하여야 한다.

4. 이 의정서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역량 강화 및 개발은 예를 들어 다음 각 호와 같은 핵심 분야를 포함할 수 있다.

가. 이 의정서의 이행과 그 의무 준수 역량

나. 상호합의조건의 협상 역량

다.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국내 입법적, 행정적, 또는 정책적 조치의 개발, 이행, 집행 역량, 그리고

라. 자국의 유전자원에 가치를 더할 내생적 연구 능력을 개발하는 각국의 역량

5. 상기 1항에서 4항에 따른 조치는 예를 들어 다음 각 호를 포함할 수 있다.

가. 법적, 제도적 개발

나. 상호합의조건 협상을 위한 훈련과 같이, 협상의 공정성 및 공정성의 촉진노력

다. 의무준수 감시 및 집행

라. 접근 및 이익공유 활동을 위해 최고로 가용한 의사소통 수단 및 인터넷 기반 체계 이용

마. 평가 방법의 개발 및 사용

바. 생물자원탐사 및 관련 연구, 그리고 분류학적 연구

사. 기술 이전, 그리고 그러한 기술 이전을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한 인프라와 기술 역량

아. 접근 및 이익공유 활동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그 구성요소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대한 기여도 강화

자. 접근 및 이익공유와 관련하여 관련 이해관계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 조치,

island developing States among them, and Parties with economies in transition for financial resources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shall be taken fully into account for capacity building and development to implement this Protocol.

3. As a basis for appropriate measures in relation to the implementation of this Protocol, developing country Parties, in particular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and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among them, and Parties with economies in transition should identify their national capacity needs and priorities through national capacity self-assessments. In doing so, such Parties should support the capacity needs and priorities of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and relevant stakeholders, as identified by them, emphasizing the capacity needs and priorities of women.

4. In support of the implementation of this Protocol, capacity-building and development may address, inter alia, the following key areas:

(a) Capacity to implement, and to comply with the obligations of, this Protocol;

(b) Capacity to negotiate mutually agreed terms;

(c) Capacity to develop, implement and enforce domestic legislative, administrative or policy measures on access and benefit-sharing; and

(d) Capacity of countries to develop their endogenous research capabilities to add value to their own genetic resources.

5. Measures in accordance with paragraphs 1 to 4 above may include, inter alia:

(a) Legal and institutional development;

(b) Promotion of equity and fairness in negotiations, such as training to negotiate mutually agreed terms;

(c) The monitoring and enforcement of compliance;

(d) Employment of best available communication tools and Internet-based systems for access and benefit-sharing activities;

(e) Development and use of valuation methods;

(f) Bioprospecting, associated research and taxonomic studies;

(g) Technology transfer, and infrastructure and technical capacity to make such technology transfer sustainable;

(h) Enhancement of the contribution of access and benefit-sharing activities to the conservation of biological diversity and the sustainable use of its components;

(i) Special measures to increase the capacity of relevant stakeholders in relation to access and

그리고

차, 유전자원 그리고/또는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과 관련하여 특히 공동체 내 여성의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토착지역공동체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 조치

6. 상기 제1항에서 제5항에 따라 착수되는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차원의 역량 강화 및 개발 계획에 대한 정보는 접근 및 이익공유와 관련한 역량 강화 및 개발의 시너지 및 조율을 촉진하기 위해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에 제공되어야 한다.

제 23 조

기술 이전, 공조, 협력

협약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에 따라 각 당사국은 이 의정서의 목적 달성을 위해 생명공학 연구를 포함하여 과학기술 연구 및 개발 프로그램에 있어서 공조하고 협력해야 한다. 각 당사국은 협약 및 이 의정서의 목적 달성을 위한 견실하고 타당성 있는 기술적, 과학적 토대를 마련하고 이를 강화할 수 있기 위해 특히 최빈개도국과 군소도서최빈개도국, 그리고 경제 전환기에 있는 당사국을 포함하여 개발도상국인 당사국의 기술 접근 및 이들 당사국에 대한 기술 이전을 촉진하고 장려할 것을 약속한다. 가능하고 적절할 경우, 그러한 공조 활동들은 해당 자원의 원산지 국가인 유전자원 제공 당사국 또는 당사국들 혹은 협약에 따라 유전자원을 획득한 당사국 또는 당사국들 내에서 이들 국가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제 24 조

비당사국

각 당사국은 비당사국들이 이 의정서를 준수하고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에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제 25 조

재정적 체계 및 자원

1. 이 의정서의 이행을 위한 재정적 자원을 고려함에 있어서, 각 당사국은 협약 제20조의

benefit-sharing; and

(j) Special measures to increase the capacity of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with emphasis on enhancing the capacity of women within those communities in relation to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or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6. Information on capacity-building and development initiatives at nation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undertaken in accordance with paragraphs 1 to 5 above, should be provided to the Access and Benefit-sharing Clearing-House with a view to promoting synergy and coordination on capacity-building and development for access and benefit-sharing.

ARTICLE 23

TECHNOLOGY TRANSFER, COLLABORATION AND COOPER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s 15, 16, 18 and 19 of the Convention, the Parties shall collaborate and cooperate in technical and scientific research and development programmes, including biotechnological research activities, as a means to achieve the objective of this Protocol. The Parties undertake to promote and encourage access to technology by, and transfer of technology to, developing country Parties, in particular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and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among them, and Parties with economies in transition, in order to enable the development and strengthening of a sound and viable technological and scientific base for the attainment of the objectives of the Convention and this Protocol. Where possible and appropriate such collaborative activities shall take place in and with a Party or the Parties providing genetic resources that is the country or are the countries of origin of such resources or a Party or Parties that have acquired the genetic resources in accordance with the Convention.

ARTICLE 24

NON-PARTIES

The Parties shall encourage non-Parties to adhere to this Protocol and to contribute appropriate information to the Access and Benefit-sharing Clearing-House.

ARTICLE 25

FINANCIAL MECHANISM AND RESOURCES

1. In considering financial resourc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Protocol, the Parties shall

조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2. 협약의 재정적 체계는 이 의정서의 재정적 체계이다.
3. 이 의정서 제22조에 언급된 역량 강화 및 개발과 관련하여 이 의정서 당사국 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국총회는 상기 제2항에 언급된 재정적 체계에 관한 지침의 심의를 위해 당사국총회에 제출함에 있어서 특히 최빈개도국과 군소도서최빈개도국, 그리고 경제 전환기에 있는 당사국을 포함하여 개발도상국인 당사국의 재정 자원에 대한 필요성은 물론, 공동체 내 여성을 포함하여 토착지역공동체의 역량 관련 필요사항과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한다.
4. 상기 제1항의 맥락에서, 이 의정서를 이행하기 위한 자국의 역량 강화 및 개발 요건을 파악하고 이행하려는 노력에 있어서도 각 당사국은 특히 최빈개도국과 군소도서최빈개도국, 그리고 경제 전환기에 있는 당사국을 포함하여 개발도상국인 당사국의 필요사항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
5. 이 의정서의 채택 이전에 합의된 사항을 포함하여 당사국총회의 관련 결정에 포함된 협약의 재정적 체계에 대한 지침은 이 조의 조항들에 준용된다.
6. 또한 선진국인 당사국들은 양자간 경로, 지역적 경로 및 다자 간 경로를 통해 이 의정서의 이행을 위한 재정적 자원과 기타 자원을 제공할 수 있고 개발도상국인 당사국들과 경제 전환기에 있는 당사국들은 이를 이용할 수 있다.

제 26 조

이 의정서의 당사국 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국총회

1. 당사국총회는 이 의정서의 당사국 회의 역할을 한다.
2. 이 의정서의 당사국이 아닌 협약 당사국은 이 의정서의 당사국총회 역할을 하는 당사국총회의 모든 회의 절차에서 참관국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당사국총회가 이 의정서의 당사국 회의 역할을 할 때, 이 의정서에 따른 결정은 이 의정서의 당사국만 내릴 수 있다.
3. 당사국총회가 이 의정서의 당사국회의 역할을 할 때, 해당 시점에 이 의정서의 당사국이 아닌 협약 당사국을 대표하는 당사국총회 사무국의 일원은 이 의정서 당사국들에 의해

take into account the provisions of Article 20 of the Convention.

2. The financial mechanism of the Convention shall be the financial mechanism for this Protocol.
3. Regarding the capacity-building and development referred to in Article 22 of this Protocol,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is Protocol, in providing guidance with respect to the financial mechanism referred to in paragraph 2 above, for consideration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hall take into account the need of developing country Parties, in particular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and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among them, and of Parties with economies in transition, for financial resources, as well as the capacity needs and priorities of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including women within these communities.
4. In the context of paragraph 1 above, the Parties shall also take into account the needs of the developing country Parties, in particular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and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among them, and of the Parties with economies in transition, in their efforts to identify and implement their capacity-building and development requirements for the purposes of the implementation of this Protocol.
5. The guidance to the financial mechanism of the Convention in relevant decisions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including those agreed before the adoption of this Protocol,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6. The developed country Parties may also provide, and the developing country Parties and the Parties with economies in transition avail themselves of, financial and other resourc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visions of this Protocol through bilateral, regional and multilateral channels.

ARTICLE 26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IS PROTOCOL

1.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hall serve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is Protocol.
2. Parties to the Convention that are not Parties to this Protocol may participate as observers in the proceedings of any meeting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is Protocol. When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es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is Protocol, decisions under this Protocol shall be taken only by those that are Parties to it.
3. When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es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is Protocol, any

이 의정서 당사국들이 선출하는 일원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4. 이 의정서의 당사국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국총회는 이 의정서의 이행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며 당사국총회에 위임된 권한 내에서 이 의정서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결정을 내린다. 당사국총회는 이 의정서에 의해 할당된 직무를 수행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가. 이 의정서의 이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들에 관한 권고를 한다.

나. 이 의정서의 이행에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산하 기구를 설치한다.

다. 적절한 경우, 유관 국제기구 및 정부 간 기구 또는 비정부 기구의 서비스 및 협력과 이들 기구가 제공하는 정보를 구하고 이용한다.

라. 이 의정서 제29조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를 전송하는 형식 및 시간적 간격을 정하고 그러한 정보는 물론 모든 산하 기구가 제출하는 보고서를 고려한다.

마. 요청받는 대로, 이 의정서의 이행에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이 의정서 및 의정서의 부칙은 물론 이 의정서에 대한 모든 추가 부칙에 대한 수정안을 검토하고 채택한다. 그리고

바. 이 의정서의 이행에 요구될 수 있는 다른 직무를 수행한다.

5. 이 의정서의 당사국 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국총회의 합의로 달리 결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국총회 의사규칙과 협약의 재정 관련 규칙은 이 의정서에 준용된다.

6. 이 의정서의 당사국 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국총회의 첫 회의는 사무국이 소집하며, 이 의정서 발효일 이후 예정된 첫 당사국총회와 동시에 개최된다. 이 의정서의 당사국 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국총회에 후속하는 정례 회의는 이 의정서의 당사국 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국총회가 달리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국총회 정례 회의와 동시에 개최된다.

7. 이 의정서의 당사국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국총회의 특별 회의는 이 의정서의 당사국 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국총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 개최되거나, 당사국의 서면 요청으로 개최하되, 사무국이 그러한 요청을 당사국들에 전달한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적어도 당사국 3분의 1이 찬성할 시에 한한다.

8. 협약의 당사국이 아닌, 국제연합, 국제연합 특별 기구, 국제원자력기구는 물론 그러한 기구의 모든 회원국 또는 참관국은 이 의정서의 당사국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국총회에 참관국으로 참석할 수 있다. 이 의정서에 포함된 사안들에 있어 자격이 있고 이 의정서의 당사국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국총회에 참관국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를 사무국에 표시한

member of the Bureau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representing a Party to the Convention but, at that time, not a Party to this Protocol, shall be substituted by a member to be elected by and from among the Parties to this Protocol.

4.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is Protocol shall keep under regular review the implementation of this Protocol and shall make, within its mandate, the decisions necessary to promote its effective implementation. It shall perform the functions assigned to it by this Protocol and shall:

(a) Make recommendations on any matters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Protocol;

(b) Establish such subsidiary bodies as are deemed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Protocol;

(c) Seek and utilize, where appropriate, the services and cooperation of, and information provided by, compete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intergovernmental and non-governmental bodies;

(d) Establish the form and the intervals for transmitting the information to be submit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9 of this Protocol and consider such information as well as reports submitted by any subsidiary body;

(e) Consider and adopt, as required, amendments to this Protocol and its Annex, as well as any additional annexes to this Protocol, that are deemed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Protocol; and

(f) Exercise such other functions as may be required f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Protocol.

5. The rules of procedure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and financial rules of the Convention shall be applied, mutatis mutandis, under this Protocol, except as may be otherwise decided by consensus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is Protocol.

6. The first meeting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is Protocol shall be convened by the Secretariat and held concurrently with the first meeting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hat is scheduled after the date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Protocol. Subsequent ordinary meetings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is Protocol shall be held concurrently with ordinary meetings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unless otherwise decided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is Protocol.

7. Extraordinary meetings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is Protocol shall be held at such other times as may be deemed necessary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is Protocol, or at the written request of any Party, provided that, within six months of the request being communicated to the Parties by

모든 국가, 국제, 정부, 비정부 기구 또는 기관은 참석한 당사국 3분의 1이 반대하지 않는 한 그러한 자격으로 참석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이 조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참관국의 참석과 참여는 상기 제5항에 언급된 의사규칙에 따라야 한다.

제 27 조 보조기구

1. 협약에 의하거나 그에 따라 설립된 모든 보조기구는 이 의정서의 당사국회의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국총회의 결정에 의거하여 의정서의 보조기구로서 기능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국회의에서 해당 보조기구가 수행하는 기능을 정한다.
2. 이 의정서의 당사자국이 아닌 협약 당사국은 모든 그러한 보조기구의 모든 회의에 참관국으로 참여할 수 있다. 협약 보조기구가 이 의정서의 보조기구 역할을 하는 경우, 이 의정서에 따른 결정은 이 의정서 당사국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3. 협약 보조기구가 이 의정서에 관한 업무와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협약의 당사국을 대표하는 그 보조기구의 임원국 중에 의정서의 비당사국은 의정서의 당사국들이 그들 중에서 선출한 임원국으로 대체된다.

제 28 조 사무국

1. 협약 제24조에 의거하여 설치된 사무국은 이 의정서의 사무국 역할을 한다.
2. 사무국의 기능에 대한 협약 제24조제1항은 이 의정서에 준용된다.
3. 이 의정서를 위한 사무국 서비스의 비용은 그것이 명확히 구별되는 범위에서 이 의정서

the Secretariat, it is supported by at least one third of the Parties.

8. The United Nations, its specialized agencies and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as well as any State member thereof or observers thereto not party to the Convention, may be represented as observers at meetings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is Protocol. Any body or agency, whether national or international, governmental or non-governmental, that is qualified in matters covered by this Protocol and that has informed the Secretariat of its wish to be represented at a meeting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a meeting of the Parties to this Protocol as an observer, may be so admitted, unless at least one third of the Parties present object.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rticle, the admission and participation of observers shall be subject to the rules of procedure, as referred to in paragraph 5 above.

ARTICLE 27 SUBSIDIARY BODIES

1. Any subsidiary body established by or under the Convention may serve this Protocol, including upon a decision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is Protocol. Any such decision shall specify the tasks to be undertaken.
2. Parties to the Convention that are not Parties to this Protocol may participate as observers in the proceedings of any meeting of any such subsidiary bodies. When a subsidiary body of the Convention serves as a subsidiary body to this Protocol, decisions under this Protocol shall be taken only by Parties to this Protocol.
3. When a subsidiary body of the Convention exercises its functions with regard to matters concerning this Protocol, any member of the bureau of that subsidiary body representing a Party to the Convention but, at that time, not a Party to this Protocol, shall be substituted by a member to be elected by and from among the Parties to this Protocol.

ARTICLE 28 SECRETARIAT

1. The Secretariat established by Article 24 of the Convention shall serve as the secretariat to this Protocol.
2. Article 24, paragraph 1, of the Convention on the functions of the Secretaria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is Protocol.

의 당사국에 의하여 충당된다. 이 의정서의 당사국 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국총회는 제1차 회의에서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결정한다.

제 29 조

감시와 보고

각 당사국은 이 의정서에 따른 의무 이행을 점검해야 하며, 이 의정서의 당사국 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국총회가 결정하는 시간적 간격과 형식으로 이 의정서의 이행을 위해 해당 당사국이 취한 조치에 관해 이 의정서의 당사국 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국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 30 조

이 의정서의 준수를 촉진하기 위한 절차와 체제

이 의정서의 당사국 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국총회는 제1차 회의에서 이 의정서 조항들의 준수를 촉진하고 위반 사례에 대처하기 위한 협력 절차 및 제도적 체제를 검토하고 승인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와 체제들은 적절한 경우 조언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규정들을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와 체제들은 협약 제27조에 따른 분쟁 해결 절차 및 체제와 별도이며, 이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제 31 조

평가 및 검토

이 의정서의 당사국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국총회는 이 의정서의 발효부터 4년 후, 그리고 그 후 이 의정서의 당사국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국총회가 정하는 시간 간격에 따라 이 의정서의 효력에 관한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3. To the extent that they are distinct, the costs of the secretariat services for this Protocol shall be met by the Parties hereto.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is Protocol shall, at its first meeting, decide on the necessary budgetary arrangements to this end.

ARTICLE 29

MONITORING AND REPORTING

Each Party shall monitor the implementation of its obligations under this Protocol, and shall, at intervals and in the format to be determined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is Protocol, report to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is Protocol on measures that it has taken to implement this Protocol.

ARTICLE 30

PROCEDURES AND MECHANISMS TO PROMOTE COMPLIANCE WITH THIS PROTOCOL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is Protocol shall, at its first meeting, consider and approve cooperative procedures and institutional mechanisms to promote compli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Protocol and to address cases of non-compliance. These procedures and mechanisms shall include provisions to offer advice or assistance, where appropriate. They shall be separate from, and without prejudice to, 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and mechanisms under Article 27 of the Convention.

ARTICLE 31

ASSESSMENT AND REVIEW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is Protocol shall undertake, four years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Protocol and thereafter at intervals determined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is Protocol, an evalu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this Protocol.

제 32 조 조 인

이 의정서는 2011년 2월 2일부터 2012년 2월 1일까지 뉴욕 국제연합본부에서 당사국의 서명을 받는다.

제 33 조 발 효

1. 이 의정서는 협약 당사국인 국가나 지역 경제 통합 기구의 50번째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혹은 가입서의 기탁일 이후 9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2. 이 의정서는 상기 제1항에 따라 의정서가 발효된 날 이후에 의정서를 비준·수락 또는 승인하거나 이 의정서에 가입하는 국가나 지역경제통합기구에 대해서는 그 국가나 지역경제통합기구가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90일째 되는 날이나 그 국가가 지역경제통합기구에 대하여 협약이 발효되는 날 중에서 가장 늦은 날짜에 발효한다.
3. 상기 제1항과 제2항의 목적상, 지역 경제 통합 기구가 기탁한 모든 문서는 그러한 기구의 회원국들이 기탁한 문서에 추가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 34 조 유 보

의정서에 대해서는 어떠한 유보도 할 수 없다.

제 35 조 탈 퇴

1. 이 의정서가 한 당사국을 대상으로 발효된 날로부터 2년 이후 언제든지 해당 당사국은 수탁자에게 서면 통지를 함으로써 이 의정서에서 탈퇴할 수 있다.
2. 모든 그러한 탈퇴는 수탁자가 그러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 혹은 해

ARTICLE 32 SIGNATURE

This Protocol shall be open for signature by Parties to the Convention at the United Nations Headquarters in New York, from 2 February 2011 to 1 February 2012.

ARTICLE 33 ENTRY INTO FORCE

1. This Protocol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ninetieth day after the date of deposit of the fiftieth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by States or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s that are Parties to the Convention.
2. This Protocol shall enter into force for a State or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 that ratifies, accepts or approves this Protocol or accedes thereto after the deposit of the fiftieth instrument as referred to in paragraph 1 above, on the ninetieth day after the date on which that State or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 deposits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or on the date on which the Convention enters into force for that State or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 whichever shall be the later.
3.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s 1 and 2 above, any instrument deposited by a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 shall not be counted as additional to those deposited by member States of such organization.

ARTICLE 34 RESERVATIONS

No reservations may be made to this Protocol.

ARTICLE 35 WITHDRAWAL

1. At any time after two years from the date on which this Protocol has entered into force for a Party, that Party may withdraw from this Protocol by giving written notification to the Depositary.
2. Any such withdrawal shall take place upon expiry of one year after the date of its receipt by

당 탈퇴 통지에 명시될 수 있는 날 중 늦은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 36 조 정 본

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본이 동등하게 정본인 이 의정서의 원본은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아래의 서명자가 정당한 권한을 위임 받아 명시된 날짜에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2010년 10월 29일 나고야에서 작성되었다.

부속서 금전적 이익과 비금전적 이익

1. 금전적 이익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 가. 수집되었거나 기타 방법으로 획득한 표본에 대한 접근료/접근료들
 - 나. 선급금
 - 다. 이행 단계에 따른 중도금
 - 라. 로열티 지급액
 - 마. 상용화의 경우 면허료
 - 바.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지원하는 신탁기금에 지급하는 특별 부담액
 - 사. 상호 합의된 경우 봉급 및 우대 조건
 - 아. 연구 지원금
 - 자. 합작투자
 - 차. 지적재산권 공동 보유

the Depository, or on such later date as may be specified in the notification of the withdrawal.

ARTICLE 36 AUTHENTIC TEXTS

The original of this Protocol, of which the Arabic, Chinese, English, French, Russian and Spanish texts are equally authentic, shall be deposited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o that effect, have signed this Protocol on the dates indicated.

DONE at Nagoya on this twenty-ninth day of October, two thousand and ten.

Annex MONETARY AND NON-MONETARY BENEFI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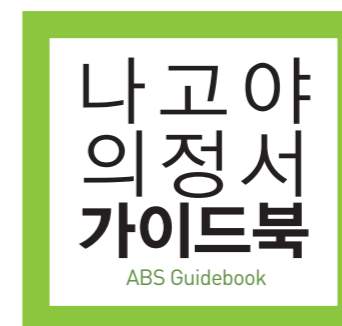
1. Monetary benefits may include, but not be limited to:
 - (a) Access fees/fee per sample collected or otherwise acquired;
 - (b) Up-front payments;
 - (c) Milestone payments;
 - (d) Payment of royalties;
 - (e) Licence fees in case of commercialization;
 - (f) Special fees to be paid to trust funds supporting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biodiversity;
 - (g) Salaries and preferential terms where mutually agreed;
 - (h) Research funding;
 - (i) Joint ventures;
 - (j) Joint ownership of relevan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2. 비금전적 이익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 가. 연구개발 결과의 공유
- 나. 가능할 경우, 유전자원을 제공하는 당사국 내, 특히 생명공학 연구 활동을 포함하여 과학 연구개발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협력, 협업, 기여
- 다. 제품 개발 참여
- 라. 교육 및 훈련에 있어서의 협력, 협업, 기여
- 마. 유전자원 현장 외 시설 출입 및 데이터베이스 접근
- 바. 합의된 양보 및 우대 조건에 의한 것들을 포함하여, 공정하고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유전자원의 제공자에게 이전하는 지식 및 기술, 생명공학을 포함하여 특히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지식과 기술 또는 생명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과 관련 있는 지식과 기술의 이전
- 사. 기술 이전을 위한 역량 강화
- 아. 제도적 역량 강화
- 자. 접근 규정의 운용 및 집행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인적, 물적 자원
- 차. 유전자원 제공 국가가 전면적으로 참여하는, 그리고 가능할 경우 그러한 국가에서 열리는 유전자원 관련 훈련
- 카. 생물학적 자료 및 분류학적 연구를 포함하여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과 관련한 과학 정보에 대한 접근
- 타. 지역 경제에 대한 기여
- 파. 유전자원 제공 당사국 내 유전자원 활용을 고려하여 보건 및 식량 안보 등 최우선 요구를 다루는 연구
- 하. 접근 및 이익공유 협정 및 후속 협력 활동으로 형성될 수 있는 제도적, 전문적 관계
- 거. 식량 안보 및 생계 유지의 이익
- 너. 사회적 인식
- 더. 관련 지적재산권의 공동 보유

2. Non-monetary benefits may include, but not be limited to:

- (a) Sharing of research and development results;
- (b) Collaboration, cooperation and contribution in scientific research and development programmes, particularly biotechnological research activities, where possible in the Party providing genetic resources;
- (c) Participation in product development;
- (d) Collaboration, cooperation and contribution in education and training;
- (e) Admittance to ex situ facilities of genetic resources and to databases;
- (f) Transfer to the provider of the genetic resources of knowledge and technology under fair and most favourable terms, including on concessional and preferential terms where agreed, in particular, knowledge and technology that make use of genetic resources, including biotechnology, or that are relevant to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tilization of biological diversity;
- (g) Strengthening capacities for technology transfer;
- (h) Institutional capacity-building;
- (i)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to strengthen the capacities for the administration and enforcement of access regulations;
- (j) Training related to genetic resources with the full participation of countries providing genetic resources, and where possible, in such countries;
- (k) Access to scientific information relevant to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biological diversity, including biological inventories and taxonomic studies;
- (l) Contributions to the local economy;
- (m) Research directed towards priority needs, such as health and food security, taking into account domestic uses of genetic resources in the Party providing genetic resources;
- (n) Institutional and professional relationships that can arise from an access and benefit sharing agreement and subsequent collaborative activities;
- (o) Food and livelihood security benefits;
- (p) Social recognition;
- (q) Joint ownership of relevan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인 쇄 2011년 12월
발 행 2011년 12월

발 행 환경부
편 집 나고야의정서대응T/F팀
전 화 02) 509-7980
팩 스 02) 509-7979
인 쇄 내담기획 031)421-8271
